

제369회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7월8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
2.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3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10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1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6.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4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9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간호조무사 종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에 관한 청원  
 19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94.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6.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8. 현안보고(인천 수돗물 등)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를 건 ..... 16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추경호·이종배·정태욱·김성찬·김정재·윤한홍·박맹우·윤상직·민경욱·김도읍 의원 발의) ..... 16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홍문표 · 이완영 · 이찬열 · 이동섭 · 황주홍 · 임재훈 · 김수민 · 김중로 · 조배숙 의원 발의) ..... 16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 · 이원욱 · 윤일규 · 강훈식 · 윤관석 · 변재일 · 이재정 · 김현권 · 김태년 · 윤영일 · 이학영 · 박재호 · 맹성규 의원 발의) ..... 16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주 · 서형수 · 조승래 · 기동민 · 박재호 · 윤일규 · 정세균 · 소병훈 · 송옥주 · 이찬열 · 안민석 · 한정애 의원 발의) ..... 16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권은희 · 박지원 · 채이배 · 김경진 · 이동섭 · 박선숙 · 박주선 · 장병완 · 주승용 · 이찬열 의원 발의) ..... 16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박찬대 · 금태섭 ·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 박주현 · 박지원 · 최도자 의원 발의) ..... 16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16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박찬대 · 금태섭 ·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 박주현 · 박지원 · 최도자 의원 발의) ..... 16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16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이동섭 · 윤영일 · 홍문표 · 황주홍 · 김광수 · 김종민 · 유성엽 · 김중회 · 장정숙 · 김철민 의원 발의) ..... 16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정갑윤 · 송희경 · 김정재 · 이철규 · 장석춘 · 김선동 · 이용득 · 김용태 · 정운천 · 임이자 · 민경욱 의원 발의) ..... 17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 · 이동섭 · 유승민 · 박선숙 · 주승용 · 김관영 · 최도자 · 하태경 · 채이배 · 김삼화 의원 발의) ..... 17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송갑석 · 이상현 · 김병기 · 백혜련 · 박정 · 민홍철 · 기동민 · 금태섭 · 신동근 · 서영교 의원 발의) ..... 17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 17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서삼석 · 이용득 · 윤일규 · 전재수 · 남인순 · 박정 · 송옥주 · 김정호 · 변재일 · 임종성 · 노웅래 의원 발의) ..... 17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정춘숙 · 박홍근 · 송갑석 · 김해영 · 제윤경 · 박선숙 · 백혜련 · 김영호 · 맹성규 · 기동민 · 강창일 · 금태섭 의원 발의) ..... 17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유승희 · 표창원 · 이수혁 · 박주민 · 이철희 · 신창현 · 송옥주 · 김종민 · 강훈식 · 이용득 의원 발의) ..... 17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 · 김기선 · 김성원 · 박완수 · 박덕흠 · 이현재 · 홍문종 · 정종섭 · 곽대훈 · 문진국 · 윤한홍 · 윤상직 · 정유섭 · 김상훈 의원 발의) ..... 17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심기준 · 강훈식 · 윤일규 · 김경협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소병훈 · 안호영 · 김병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17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김성수 · 신창현 · 박정 · 홍의락 · 서영교 · 권미혁 · 박홍근 · 박찬대 · 전해철 · 김영호 · 남인순 의원 발의) ..... 17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신창현 · 민홍철 · 추미애 · 강길부 · 강병원 · 김영진 · 최재성 · 김상희 · 이철희 의원 발의) ..... 17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박대출 · 박완수 · 홍문종 · 서정원 · 김석기 · 함진규 · 윤상직 · 최교일 · 윤상현 · 김정재 의원 발의) ..... 17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백혜련 · 신창현 · 이규희 · 표창원 · 윤호중 · 최재성 · 유승희 · 이원욱 · 이철희 · 윤영일 · 김성수 의원 발의) ..... 17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송갑석 · 윤영일 · 이용득 · 김태년 · 이동섭 · 정세균 · 최재성 · 설훈 · 윤준호 · 박정 · 정성호 · 이찬열 의원 발의) ..... 17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박주현 · 이개호 · 김철민 · 홍문표 · 설훈 · 김현권 · 박재호 · 오영훈 · 황주홍 · 이찬열 의원 발의) ..... 17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임종성 · 신동근 · 서삼석 · 서형수 · 신창현 · 윤관석 · 전해숙 · 윤후덕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 17
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 · 김기선 · 김성원 · 박완수 · 박덕흠 · 이현재 · 홍문종 · 정종섭 · 곽대훈 · 문진국 · 함진규 · 윤한홍 · 윤상직 · 정유섭 · 김상훈 의원 발의) ..... 17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김현권 · 박정 · 소병훈 · 김철민 · 강훈식 · 윤관석 · 노웅래 · 김영진 · 이후삼 의원 발의) ..... 17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정춘숙 · 박홍근 · 송갑석 · 김해영 · 제윤경 · 박선숙 · 백혜련 · 김영호 · 맹성규 · 기동민 · 강창일 · 금태섭 의원 발의) ..... 17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기동민 · 김정우 · 김성수 · 신창현 · 도종환 · 송옥주 · 심재권 · 박경미 · 노웅래 의원 발의) ..... 18
33.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고용진 · 김정우 · 김병기 · 김철민 · 이찬열 · 원혜영 · 기동민 · 윤관석 · 전현희 · 김현권 · 손금주 · 박재호 · 박주민 · 남인순 · 정인화 · 서형수 · 윤호중 · 김정호 · 권미혁 · 박홍근 의원 발의) ..... 18
3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노웅래 · 위성곤 · 윤준호 · 김태년 · 서삼석 · 윤일규 · 박정 · 어기구 · 심기준 · 전현희 · 김병기 · 표창원 · 금태섭 · 윤관석 의원 발의) ..... 18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3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18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김학용 · 박인숙 · 김성찬 · 원유철 의원 발의) ..... 18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임이자 · 신보라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석 · 정양식 · 하태경 · 김성찬 · 곽대훈 의원 발의) ..... 18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 · 김광수 · 김경진 · 김종희 · 박주현 · 유성엽 · 윤영일 · 이찬열 · 정인화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 18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박완수 · 김현아 · 박인숙 · 추경호 · 이종배 · 박명재 · 정병국 · 김무성 · 이채익 의원 발의) ..... 18
4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박용진 · 김병기 · 김영진 · 고용진 · 강병원 · 금태섭 · 전해숙 · 김병관 · 이철희 · 신동근 의원 발의) ..... 18
4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 · 정운천 · 문진국 · 정갑윤 · 김선동 · 김기선 · 이은재 · 이종배 · 정유섭 · 김석기 의원 발의) ..... 18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주 · 서형수 · 조승래 · 박재호 · 윤일규 · 정세균 · 소병훈 · 한정애 · 송옥주 · 이찬열 · 안민석 의원 발의) ..... 18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유승희 · 표창원 · 이수혁 · 고용진 · 박주민 · 이철희 · 신창현 · 송옥주 · 김성수 · 김종민 의원 발의) ..... 18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박찬대 · 금태섭 ·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 박주현 · 박지원 · 최도자 의원 발의) …… 18
4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18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신창현 · 김민기 · 전해숙 · 송영길 · 한정애 · 이인영 · 이용득 · 송갑석 · 서형수 · 전재수 의원 발의) …… 1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심기준 · 김경협 · 소병훈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18
5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종민 · 백혜련 · 신창현 · 송갑석 · 최재성 · 유승희 · 서영교 · 이철희 · 고용진 · 강병원 의원 발의) …… 18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금태섭 · 김종민 · 신창현 · 유동수 · 유승희 · 이상헌 · 정세균 · 조승래 · 황주홍 의원 발의) …… 18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용호 · 신동근 · 이철희 · 유승희 · 윤호중 · 신창현 · 송영길 · 이원욱 · 도종환 · 고용진 · 금태섭 · 김성수 의원 발의) …… 18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김상희 · 안호영 · 권미혁 · 윤일규 · 윤호중 · 이종걸 · 권칠승 · 이용득 · 윤관석 의원 발의) …… 19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전희경 · 엄용수 · 김상훈 · 조훈현 · 광대훈 · 윤재옥 · 김성찬 · 경대수 · 성일종 · 김진태 · 박대출 · 이명수 의원 발의) …… 19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5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 · 김현권 · 박정 · 송기현 · 신창현 · 김정우 · 박재호 · 설훈 · 이원욱 · 심재권 · 노웅래 · 서삼석 · 서영교 · 윤준호 · 전현희 · 금태섭 · 위성곤 · 김태년 의원 발의) …… 19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이정미 · 유승희 · 박선숙 · 윤준호 · 장병완 · 문진국 · 한정애 · 황주홍 · 유승민 의원 발의) …… 19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이진복 · 유기준 · 여상규 · 이은재 · 주호영 · 김재원 · 김대흠 · 박순자 · 추경호 의원 발의) …… 19
6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임이자 · 신보라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석 · 정양석 · 하태경 · 김성찬 · 광대훈 의원 발의) …… 19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황영철 · 김광립 · 김현아 · 성일종 · 이명수 · 김재원 · 박덕흠 · 민경욱 · 김영우 · 이종명 의원 발의) …… 19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신창현 · 박정 · 김병욱 · 유승희 · 신상진 · 소병훈 · 이원욱 · 고용진 · 신경민 · 김동철 · 김성수 · 홍익표 · 김종민 · 이철희 · 윤후덕 · 이학영 · 주승용 · 채이배 의원 발의) …… 19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성찬 · 이찬열 · 최도자 · 전해숙 · 황영철 · 정인화 · 이종걸 · 유성엽 · 윤준호 의원 발의) …… 19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김성찬 · 정태욱 · 최연혜 · 윤상직 · 윤종필 · 이종명 · 광대훈 · 이채익 · 정인화 의원 발의) …… 19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심기준 · 이용득 · 김병기 · 이상헌 · 최인호 · 임종성 · 윤관석 · 이상돈 · 김철민 · 원혜영 의원 발의) …… 19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김학용 · 남인순 · 박정 · 신창현 · 유승희 · 이상헌 · 임종성 · 정세균 · 황주홍 의원 발의) …… 19



-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노응래·김종민·김현권·서삼석·홍문표·위성곤·신창현·강창일·맹성규·윤준호·심재권·신경민 의원 발의) ..... 19
-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엄용수·김용태·황영철·김선동·안상수·김수민·김영우·박완수·유민봉 의원 발의) ..... 19
- 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성찬·김상훈·박성중·김기선·윤종필·이명수·경대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발의) ..... 19
-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정갑윤·김학용·박인숙·최교일·이양수·김순례·김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 19
-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455) ..... 19
-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 19
- 7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금태섭·기동민·김병관·김병기·김진표·신경민·신창현·심재권·우원식·이종걸·표창원 의원 발의) ..... 19
- 7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0077) ..... 19
- 7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찬대·금태섭·정인화·장정숙·김삼화·박주현·박지원·최도자 의원 발의) ..... 20
- 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 20
- 7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서형수·정세균·강길부·송기현·김정호·신동근·박재호·이석현·윤관석·송옥주·최인호·이동섭·김영주·안규백 의원 발의) ..... 20
- 7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 7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박인숙·추경호·이종배·박명재·김무성·강석호·이진복·김도읍·이채익 의원 발의) ..... 20
- 8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상훈·박지원·정태욱·김영춘·이석현·조정식·이동섭·신용현·심재권·이찬열·오제세 의원 발의) ..... 20
- 8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심기준·이용득·김병기·이상헌·최인호·임종성·윤관석·김철민·원혜영 의원 발의) ..... 20
- 8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박정·변재일·송갑석·신창현·유승희·윤후덕·이상헌·최재성 의원 발의) ..... 20
- 8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상훈·박지원·정태욱·김영춘·이석현·조정식·이동섭·신용현·심재권·이찬열·오제세 의원 발의) ..... 20
- 8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찬열·장정숙·김수민·이동섭·김동철·최도자·임재훈·정인화·이채익·성일종·이상헌 의원 발의) ..... 20
- 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동근·이철희·유승희·신창현·송영길·이원욱·도종환·정성호·고용진·금태섭·김성수 의원 발의) ..... 20
-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정병국·김정재·이동섭·김중로·이찬열·오신환·주승용·정우택·최연혜·송희경·김종희 의원 발의) ..... 20
-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영주·서형수·조승래·기동민·박재호·윤일규·정세균·소병훈·한정애·송옥주·이찬열·안민석 의원 발의) ..... 20
- 8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황영철·김광립·김현아·성일종·이명수·김재원·박덕흠·민경욱·김영우·이종명 의원 발의) ..... 20
-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이철규·김정재·김석기·송희경·임이자·장석춘·김선동·김현아·이용득·김용태·박순자·정운천·김재경·김규환·신보라·유기준·이채익 의원 발의) ..... 20

9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0
9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임종성 · 신동근 · 서삼석 · 서형수 · 신창현 · 윤관석 · 전해숙 · 윤후덕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 20
9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안규백 · 유승희 · 김영춘 · 이종걸 · 김부겸 · 박재호 · 김종민 · 민병두 · 조승래 의원 발의) ..... 20
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이찬열 · 강훈식 · 어기구 · 신창현 · 김경협 · 백혜련 · 윤후덕 · 서형수 · 박홍근 · 이정미 · 최재성 · 안호영 · 임종성 · 김병욱 · 송옥주 · 안민석 의원 발의) ..... 20
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우원식 · 박재호 · 서영교 · 김상희 · 강병원 · 이수혁 · 조정식 · 이철희 · 박경미 · 유승희 · 오영훈 · 신창현 · 고용진 · 백혜련 · 최재성 · 유동수 의원 발의) ..... 20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종 · 박인숙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 21
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이원욱 · 김영진 · 최재성 · 이상현 · 박정 · 박재호 · 박병석 · 이수혁 · 주승용 의원 발의) ..... 21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성찬 · 유의동 · 정동영 · 장정숙 · 윤준호 · 김삼화 · 이동섭 · 김관영 · 고용진 · 손금주 의원 발의) ..... 21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 · 윤일규 · 윤호중 · 이후삼 · 김상희 · 김경협 · 안호영 · 김병관 · 설훈 · 이인영 의원 발의) ..... 21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김경협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21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21
1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1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서영교 · 김현권 · 신동근 · 민홍철 · 권철승 · 이철희 · 이용득 · 송옥주 · 이종걸 의원 발의) ..... 21
1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1
10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김선동 · 이명수 · 홍문표 · 정태욱 · 이종구 · 박덕흠 · 김승희 · 최교일 · 윤재옥 의원 발의) ..... 21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유은혜 · 유동수 · 문희상 · 김동철 · 이철희 · 권철승 · 정재호 · 강병원 · 표창원 · 노웅래 · 인재근 의원 발의) ..... 21
10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신창현 ·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 표창원 · 이철희 · 박재호 · 송옥주 · 강병원 · 이용득 의원 발의) ..... 21
10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신창현 ·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 이철희 · 박재호 · 송옥주 · 강병원 의원 발의) ..... 21
10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임종성 · 김경협 · 정세균 · 윤일규 · 정춘숙 · 강훈식 · 이찬열 · 박홍근 · 신창현 · 조승래 · 윤후덕 · 서형수 의원 발의) ..... 21
10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1
1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신창현 · 심재권 · 박홍근 · 이용득 · 이정미 · 김혜영 · 서형수 · 김철민 · 김영호 · 기동민 · 박정 · 민홍철 · 변재일 · 노웅래 의원 발의) ..... 21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김민기 · 김중로 · 김병기 · 윤관석 · 채이배 · 유승희 · 송옥주 · 이상현 · 정인화 · 송갑석 · 금태섭 · 박병석 · 박찬대 · 민홍철 · 김철민 · 윤후덕 · 손금주 · 장정숙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81) ..... 21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이수혁 · 김철민 · 윤준호 · 김종민 · 신창현 · 이상현 · 이철희 · 윤후덕 의원 발의) ..... 21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윤종필 · 추경호 · 김순례 · 김광림 · 강효상 · 이종구 · 박덕흠 · 김선동 · 정용기 · 박명재 · 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24) ..... 21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윤후덕 · 김경협 · 정세균 · 정춘숙 · 강훈식 · 안민석 · 이찬열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28) ..... 22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정세균 · 김경협 · 윤일규 · 백재현 · 전재수 · 김성환 · 김병기 · 김혜영 · 이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15) ..... 22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임종성 · 김경협 · 정세균 · 윤일규 · 정춘숙 · 강훈식 · 이찬열 · 노웅래 · 박홍근 · 신창현 · 김철민 · 조승래 · 윤후덕 · 송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26) ..... 22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송옥주 · 이학영 · 이용득 · 심기준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민홍철 · 신동근 · 김현권 · 김철민 · 김정호 · 전재수 의원 발의) ..... 22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표창원 · 박찬대 · 박정 · 김태년 · 김혜영 · 서삼석 · 권미혁 · 맹성규 · 김경협 · 송갑석 · 이종걸 · 노웅래 의원 발의) ..... 22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박정 · 김병기 · 김상희 · 이학영 · 전해숙 · 박순자 · 정춘숙 · 박완주 · 채윤경 · 이철희 · 백혜련 · 남인순 의원 발의) ..... 22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조훈현 · 이양수 · 문진국 · 윤종필 · 유민봉 · 안상수 · 홍철호 · 김현아 · 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14) ..... 22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 · 이동섭 · 장정숙 · 김중희 · 주승용 · 이찬열 · 임재훈 · 황주홍 · 김관영 · 김동철 의원 발의) ..... 22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기동민 · 고용진 · 박홍근 · 신경민 · 권칠승 · 김종민 · 송갑석 · 전재수 · 김병기 · 신창현 · 김철민 · 조정식 · 김상희 · 박선숙 · 심기준 · 박정 · 우상호 · 정춘숙 · 채이배 · 소병훈 · 인재근 의원 발의) ..... 22
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17) ..... 22
1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윤후덕 · 김경협 · 정세균 · 정춘숙 · 강훈식 · 안민석 · 이찬열 · 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29) ..... 22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22
1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백혜련 · 박찬대 · 신창현 · 김병기 · 금태섭 · 박주민 · 김종민 · 송옥주 · 이용득 · 김경협 의원 발의) ..... 22
1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임이자 · 김현아 · 이용득 · 이종명 · 신상진 · 이완영 · 엄용수 · 김성원 · 박성중 의원 발의) ..... 22
1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2
1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 · 이용득 · 서영교 · 윤준호 · 김철민 · 신창현 · 김병기 · 송기현 · 김태년 · 노웅래 · 민병두 의원 발의) ..... 22

- 1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윤후덕 · 김경협 · 정세균 · 정춘숙 · 강훈식 · 안민석 · 이찬열 · 박홍근 의원 발의) ..... 22
- 13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 · 송갑석 · 김병기 · 송옥주 · 정인화 · 황희 · 전해철 · 표창원 · 박광온 · 윤후덕 · 백혜련 의원 발의) ..... 22
- 1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황주홍 · 정동영 · 윤소하 · 박지원 · 김종민 · 이찬열 · 유성엽 · 김종희 · 장병완 의원 발의) ..... 22
-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김현권 · 전재수 · 남인순 · 김병기 · 송갑석 · 박홍근 · 김영진 · 고용진 · 기동민 · 맹성규 의원 발의) ..... 23
- 134.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혜영 · 윤준호 · 윤관석 · 권칠승 · 김두관 · 김종민 · 송갑석 · 송기현 · 김병기 의원 발의) ..... 23
- 1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송갑석 · 이상현 · 김병기 · 박정 · 신경민 · 민홍철 · 기동민 · 금태섭 · 신동근 의원 발의) ..... 23
- 13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송옥주 · 이학영 · 이용득 · 심기준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민홍철 · 신동근 · 김현권 · 김철민 · 김정호 · 전재수 의원 발의) ..... 23
-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이찬열 · 김태년 · 강훈식 · 어기구 · 신창현 · 김경협 · 백혜련 · 윤후덕 · 서형수 · 박홍근 · 이정미 · 최재성 · 안호영 · 임종성 · 김병욱 · 송옥주 · 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7) ..... 23
-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성찬 · 유의동 · 정동영 · 장정숙 · 윤준호 · 김삼화 · 이동섭 · 김관영 · 고용진 · 손금주 의원 발의) ..... 23
-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20) ..... 23
-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삼화 · 주승용 · 이동섭 · 박주선 · 남인순 · 원혜영 · 전해숙 · 신용현 · 최도자 의원 발의) ..... 23
-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 · 이종구 · 최연혜 · 백승주 · 최도자 · 이은재 · 김무성 · 박주선 · 김성찬 · 정병국 의원 발의) ..... 23
-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표창원 · 위성곤 · 전재수 · 김철민 · 박찬대 · 김상희 · 김영호 · 김병기 · 노용래 의원 발의) ..... 23
-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윤한홍 · 장석춘 · 신보라 · 임이자 · 유기준 · 김현아 · 강효상 · 김학용 · 강석호 · 박맹우 · 김규환 · 정갑윤 · 송석준 · 광대훈 · 김세연 · 이완영 · 민경욱 · 주광덕 · 김진태 의원 발의) ..... 23
-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 · 장정숙 · 김성원 · 이동섭 · 원유철 · 유승민 · 하태경 · 주승용 · 지상욱 · 정태욱 의원 발의) ..... 23
-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태년 · 송옥주 · 강훈식 · 유승희 · 김성수 · 강병원 · 강길부 · 신창현 · 이철희 · 김상희 · 김영진 · 김경협 · 김정호 · 이용득 · 이규희 · 서형수 · 정성호 의원 발의) ..... 23
- 146.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이동섭 · 한정애 · 김삼화 · 김중로 · 변재일 · 문진국 · 김영호 · 이찬열 · 박주선 의원 발의) ..... 23
- 14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채이배 · 이동섭 · 한정애 · 김삼화 · 김중로 · 변재일 · 이춘석 · 문진국 · 이찬열 의원 발의) ..... 23
-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신용현 · 이동섭 · 정태욱 · 김관영 · 김삼화 · 오신환 · 김수민 · 박주선 · 손금주 · 유성엽 의원 발의) ..... 23
-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원 · 김무성 · 민경

- 육·정태욱·김종석·홍문표·정유섭·송언석·주호영·이장우·김정재·김순례·임이자·박성중 의원 발의) ..... 23
1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은권·정종섭·최연혜·김석기·신보라·윤상직·김기선·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성원·성일중·정태욱·김태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 24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이은권·이현재·박덕흠·추경호·정갑윤·이종구·윤종필·홍문표·경대수 의원 발의) ..... 24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훈·송옥주·이용득·여영국·서형수 의원 발의) ..... 24
153.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정세균·위성곤·윤일규·문진국·김경협·박재호·최재성·윤후덕·어기구·노웅래·이찬열·안규백·우원식·김정호·소병훈·서형수·조승래·설훈·이원욱·정춘숙·강훈식·한정애·김병욱·안호영·김현권·임종성·기동민·송옥주·안민석·박찬대·홍의락·박홍근·김부겸·채이배·신창현·백재현·김성수·이수혁·서영교 의원 발의) ..... 24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 24
15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전재수·신동근·최인호·이상현·서삼석·김철민·이학영·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 24
15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윤일규·윤호중·이후삼·김상희·김경협·안호영·김병관·이인영·윤후덕 의원 발의) ..... 24
1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성일중·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 24
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윤영일·신창현·이석현·윤후덕·전혜숙·박정·조승래·황희·김민기·이찬열·김해영·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23) ..... 24
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최연혜·문진국·이명수·김선동·김기선·홍문중·정종섭·김재원·이현승·곽대훈·강효상·윤종필·최교일·염동열 의원 발의) ..... 24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송옥주·정세균·신창현·최인호·이학영·이후삼·안호영·김철민·안규백 의원 발의) ..... 24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 24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전재수·신창현·박정·임종성·윤후덕·김민기·신동근·이석현·안호영·이찬열·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07) ..... 24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영호·신창현·김종민·민홍철·맹성규·정춘숙·이학영·김종대·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 24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찬열·강훈식·어기구·신창현·김경협·백혜련·윤후덕·서형수·박홍근·이정미·최재성·안호영·임종성·김병욱·송옥주·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8) ..... 24
1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황주홍·정동영·윤소하·박지원·김종민·이찬열·유성엽·김중회·장병완 의원 발의) ..... 24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경대수·김수민·이학재·유성엽·강훈식·정인화·장병완·황주홍·정동영·최도자·윤준호·이찬열 의원 발의) ..... 24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박재호·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33) ..... 24

-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정진석 · 박덕흠 · 성일종 · 김상훈 · 김용태 · 정태욱 · 박맹우 · 주광덕 · 김정훈 · 김광립 · 박완수 · 윤재옥 · 이채익 의원 발의) ..... 24
- 1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25
- 17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5
- 1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25
- 1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 · 윤상직 · 주호영 · 이명수 · 김도읍 · 경대수 · 김종희 · 송희경 · 원유철 · 박맹우 의원 발의) ..... 25
- 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25
-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24) ..... 25
-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임종성 · 김경협 · 정세균 · 윤일규 · 정춘숙 · 강훈식 · 이찬열 · 김철민 · 김민기 · 노웅래 · 박홍근 · 신창현 · 조승래 · 윤후덕 · 맹성규 · 한정애 · 송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28) ..... 25
-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25
- 1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 · 기동민 · 김영호 · 김정우 · 박찬대 · 서삼석 · 윤소하 · 이후삼 · 임종성 · 전해철 · 조승래 의원 발의) ..... 25
- 1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이상헌 · 유승희 · 원혜영 · 강창일 · 김종민 · 이규희 · 신창현 · 이정미 · 이용득 · 정세균 · 한정애 의원 발의) ..... 25
- 1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김성수 · 기동민 · 김상희 · 강창일 · 안호영 · 송갑석 · 김해영 · 이용득 · 이학영 · 이후삼 · 이종걸 의원 발의) ..... 25
- 1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김성수 · 기동민 · 김상희 · 강창일 · 안호영 · 송갑석 · 김해영 · 이용득 · 이학영 · 이후삼 · 이종걸 의원 발의) ..... 25
- 1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임종성 · 김경협 · 정세균 · 윤일규 · 정춘숙 · 강훈식 · 이찬열 · 김철민 · 김민기 · 노웅래 · 박홍근 · 신창현 · 조승래 · 윤후덕 · 맹성규 · 한정애 · 송기현 의원 발의) ..... 25
- 1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성환 · 금태섭 · 노웅래 · 민홍철 · 신창현 · 심재권 · 이상헌 · 이용득 · 이후삼 · 정세균 · 황주홍 의원 발의) ..... 25
- 18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조승래 · 서형수 · 박재호 · 최재성 · 김종훈 · 전재수 · 신동근 · 박용진 · 윤호중 · 최인호 · 이학영 의원 발의) ..... 25
- 1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권미혁 · 김경협 · 김병관 · 김정호 · 박재호 · 백재현 · 윤후덕 · 이상민 · 이석현 · 이종걸 · 이찬열 의원 발의) ..... 25
- 1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송옥주 · 여영국 · 이용득 · 이후삼 · 김종훈 · 서형수 의원 발의) ..... 25
-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종배 · 신보라 · 김명연 · 김세연 · 이명수 · 안상수 · 박성중 · 윤재옥 · 주호영 · 박덕흠 · 백승주 · 김정재 · 황영철 의원 발의) ..... 25
- 1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 · 송영길 · 박찬대 · 김병기 · 이수혁 · 어기구 · 이규희 · 송갑석 · 신창현 · 최재성 · 이철희 · 홍의락 의원 발의) ..... 26
- 18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이은권 · 정종섭 · 최연혜 · 김석기 · 신보라 · 윤상직 · 김기선 · 곽대훈 · 최교일 · 엄용수 · 김성원 · 성일종 · 정태욱 · 김

태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 26

18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이학영·이용득·심기준·윤후덕·윤관석·김경협·민홍철·신동근·김현권·김철민·김정호·전재수 의원 발의) ..... 26

190.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유은혜·유동수·문희상·김동철·이철희·권칠승·정재호·강병원·표창원·노웅래·인재근 의원 발의) ..... 26

19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성환·금태섭·노웅래·민홍철·신창현·심재권·이상현·이용득·이후삼·정세균·황주홍 의원 발의) ..... 26

192. 간호조무사 종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에 관한 청원(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6

19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94.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6

19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6

196.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6

19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6

198. 현안보고(인천 수돗물 등) ..... 2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랜만에 상임위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이정미 대표님은 화면에서 더 많이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 매일매일 봐요.

○위원장 김학용 하여튼 위원님들, 본의 아니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을 해서 일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 이상 산적인 현안들을 미루는 것은 저는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박차를 가하셔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준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현안질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현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못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할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는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산하기관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만 배석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님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 기관장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시 반서부터 녹화중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읽는 것이 많아서 한 바퀴 돌아가면 12시 반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것도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유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를 건**

(11시04분)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동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보고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제안설명, 현안보고 및 검토보고도 통합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환경부 소관 추경안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추경호·이종배·정태욱·김성찬·김정재·윤한홍·박맹우·윤상직·민경욱·김**

도읍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홍문표·이완영·이찬열·이동섭·황주홍·임재훈·김수민·김중로·조배숙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영주·서형수·조승래·기동민·박재호·윤일규·정세균·소병훈·송옥주·이찬열·안민석·한정애 의원 발의)**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권은희·박지원·채이배·김경진·이동섭·박선숙·박주선·장병완·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찬대·금태섭·정인화·장정숙·김삼화·박주현·박지원·최도자 의원 발의)**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운·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찬대·금태섭·정인화·장정숙·김삼화·박주현·박지원·최도자 의원 발의)**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운·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동섭·윤영일·홍문표·황주홍·김광수·김종민·유성엽·**



- 김종희·장정숙·김철민 의원 발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송희경·김정재·이철규·장석춘·김선동·이용득·김용태·정운천·임이자·민경욱 의원 발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이동섭·유승민·박선숙·주승용·김관영·최도자·하대경·채이배·김삼화 의원 발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송갑석·이상현·김병기·백혜련·박정·민홍철·기동민·금태섭·신동근·서영교 의원 발의)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상훈·박지원·정태욱·김영춘·이석현·조정식·이동섭·신용현·심재권·이찬열·오제세 의원 발의)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서삼석·이용득·윤일규·전재수·남인순·박정·송옥주·김정호·변재일·임종성·노웅래 의원 발의)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제윤경·박선숙·백혜련·김영호·맹성규·기동민·강창일·금태섭 의원 발의)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유승희·표창원·이수혁·박주민·이철휘·신창현·송옥주·김종민·강훈식·이용득 의원 발의)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기선·김성원·박완수·박덕흠·이현재·홍문중·정종섭·곽대훈·문진국·윤한홍·윤상직·정유섭·김상훈 의원 발의)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심기준·강훈식·윤일규·김경협·서형수·윤후덕·기동민·임종성·소병훈·안호영·김병욱·정춘숙·송옥주·박홍근·조승래·이찬열 의원 발의)
2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김성수·신창현·박정·홍의락·서영교·권미혁·박홍근·박찬대·전해철·김영호·남인순 의원 발의)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민홍철·추미애·강길부·강병원·김영진·최재성·김상희·이철휘 의원 발의)
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박대출·박완수·홍문중·서창원·김석기·함진규·윤상직·최교일·윤상현·김정재 의원 발의)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혜련·신창현·이규희·표창원·윤호중·최재성·유승희·이원욱·이철휘·윤영일·김성수 의원 발의)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송갑석·윤영일·이용득·김태년·이동섭·정세균·최재성·설훈·윤준호·박정·정성호·이찬열 의원 발의)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박주현·이개호·김철민·홍문표·설훈·김현권·박재호·오영훈·황주홍·이찬열 의원 발의)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신동근·서삼석·서형수·신창현·윤관석·전혜숙·윤후덕·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기선·김성원·박완수·박덕흠·이현재·홍문중·정종섭·곽대훈·문진국·함진규·윤한홍·윤상직·정유섭·김상훈 의원 발의)
3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박정·소병훈·김철민·강훈식·윤관석·노웅래·김영진·이후삼 의원 발의)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제윤경·박선숙·백혜련·김영호·맹성규·기

- 동민 · 강창일 · 금태섭 의원 발의)
-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기동민 · 김정우 · 김성수 · 신창현 · 도종환 · 송옥주 · 심재권 · 박경미 · 노웅래 의원 발의)
- 33.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고용진 · 김정우 · 김병기 · 김철민 · 이찬열 · 원혜영 · 기동민 · 윤관석 · 전현희 · 김현권 · 손금주 · 박재호 · 박주민 · 남인순 · 정인화 · 서형수 · 윤호중 · 김정호 · 권미혁 · 박홍근 의원 발의)
- 3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노웅래 · 위성곤 · 윤준호 · 김태년 · 서삼석 · 윤일규 · 박정 · 어기구 · 심기준 · 전현희 · 김병기 · 표창원 · 금태섭 · 윤관석 의원 발의)
- 3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김학용 · 박인숙 · 김성찬 · 원유철 의원 발의)
-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임이자 · 신보라 · 한정애 · 송옥주 · 김중석 · 정양석 · 하태경 · 김성찬 · 곽대훈 의원 발의)
-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 · 김광수 · 김경진 · 김중희 · 박주현 · 유성엽 · 윤영일 · 이찬열 · 정인화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박완수 · 김현아 · 박인숙 · 추경호 · 이종배 · 박명재 · 정병국 · 김무성 · 이채익 의원 발의)
- 4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 · 박용진 · 김병기 · 김영진 · 고용진 · 강병원 · 금태섭 · 전해숙 · 김병관 · 이철희 · 신동근 의원 발의)
- 4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 · 정운천 · 문진국 · 정갑윤 · 김선동 · 김기선 · 이은재 · 이종배 · 정유섭 · 김석기 의원 발의)
-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주 · 서형수 · 조승래 · 박재호 · 윤일규 · 정세균 · 소병훈 · 한정애 · 송옥주 · 이찬열 · 안민석 의원 발의)
-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유승희 · 표창원 · 이수혁 · 고용진 · 박주민 · 이철희 · 신창현 · 송옥주 · 김성수 · 김종민 의원 발의)
- 46.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박찬대 · 금태섭 ·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 박주현 · 박지원 · 최도자 의원 발의)
- 47.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신창현 · 김민기 · 전해숙 · 송영길 · 한정애 · 이인영 · 이용득 · 송갑석 · 서형수 · 전재수 의원 발의)
-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심기준 · 김경협 · 소병훈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5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종민 · 백혜련 · 신창현 · 송갑석 · 최재성 · 유승희 · 서영교 · 이철희 · 고용진 · 강병원 의원 발의)
- 5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금태섭 · 김종민 · 신창현 · 유동수 · 유승희 · 이상현 · 정세균 · 조승래 · 황주홍 의원 발의)
- 5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용호 · 신동근 · 이철희 · 유승희 · 윤호중 · 신창현 · 송영길 ·

- 이원욱·도종환·고용진·금태섭·김성수 의원 발의)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상희·안호영·권미혁·윤일규·윤호중·이종걸·권철승·이용득·윤관석 의원 발의)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전희경·엄용수·김상훈·조훈현·곽대훈·윤재옥·김성찬·경대수·성일종·김진태·박대출·이명수 의원 발의)
5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김현권·박정·송기현·신창현·김정우·박재호·설훈·이원욱·심재권·노웅래·서삼석·서영교·윤준호·전현희·금태섭·위성곤·김태년 의원 발의)
5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이정미·유승희·박선숙·윤준호·장병완·문진국·한정애·황주홍·유승민 의원 발의)
59.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60.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임이자·신보라·한정애·송옥주·김종석·정양석·하태경·김성찬·곽대훈 의원 발의)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황영철·김광립·김현아·성일종·이명수·김재원·박덕흠·민경욱·김영우·이종명 의원 발의)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창현·박정·김병욱·유승희·신상진·소병훈·이원욱·고용진·신경민·김동철·김성수·홍익표·김종민·이철희·윤후덕·이학영·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성찬·이찬열·최도자·전혜숙·황영철·정인화·이종걸·유성엽·윤준호 의원 발의)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성찬·정대욱·최연혜·윤상직·윤종필·이종명·곽대훈·이채익·정인화 의원 발의)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심기준·이용득·김병기·이상현·최인호·임종성·윤관석·이상돈·김철민·원혜영 의원 발의)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김학용·남인순·박정·신창현·유승희·이상현·임종성·정세균·황주홍 의원 발의)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노웅래·김종민·김현권·서삼석·홍문표·위성곤·신창현·강창일·맹성규·윤준호·심재권·신경민 의원 발의)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엄용수·김용태·황영철·김선동·안상수·김수민·김영우·박완수·유민봉 의원 발의)
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성찬·김상훈·박성중·김기선·윤종필·이명수·경대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발의)
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정갑윤·김학용·박인숙·최교일·이양수·김순례·김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7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455)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7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금태섭·기동민·김병관·김병기·김진표·신경민·신창현·심재권·우원식·이종걸·표창원 의원 발의)
7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0077)

- 7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 · 이찬열 · 박찬대 · 금태섭 · 정인화 · 장정숙 · 김삼화 · 박주현 · 박지원 · 최도자 의원 발의)
- 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온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 7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 · 서형수 · 정세균 · 강길부 · 송기현 · 김정호 · 신동근 · 박재호 · 이석현 · 윤관석 · 송옥주 · 최인호 · 이동섭 · 김영주 · 안규백 의원 발의)
- 7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박인숙 · 추경호 · 이종배 · 박명재 · 김무성 · 강석호 · 이진복 · 김도읍 · 이채익 의원 발의)
- 8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 8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 · 심기준 · 이용득 · 김병기 · 이상헌 · 최인호 · 임종성 · 윤관석 · 김철민 · 원혜영 의원 발의)
- 8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박정 · 변재일 · 송갑석 · 신창현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헌 · 최재성 의원 발의)
- 8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 8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찬열 · 장정숙 · 김수민 · 이동섭 · 김동철 · 최도자 · 임재훈 · 정인화 · 이채익 · 성

일종 · 이상헌 의원 발의)

- 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신동근 · 이철희 · 유승희 · 신창현 · 송영길 · 이원욱 · 도종환 · 정성호 · 고용진 · 금태섭 · 김성수 의원 발의)
-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정병국 · 김정재 · 이동섭 · 김중로 · 이찬열 · 오신환 · 주승용 · 정우택 · 최연혜 · 송희경 · 김중희 의원 발의)
-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주 · 서형수 · 조승래 · 기동민 · 박재호 · 윤일규 · 정세균 · 소병훈 · 한정애 · 송옥주 · 이찬열 · 안민석 의원 발의)
- 8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황영철 · 김광립 · 김현아 · 성일종 · 이명수 · 김재원 · 박덕흠 · 민경욱 · 김영우 · 이종명 의원 발의)
-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이철규 · 김정재 · 김석기 · 송희경 · 임이자 · 장석춘 · 김선동 · 김현아 · 이용득 · 김용태 · 박순자 · 정운천 · 김재경 · 김규환 · 신보라 · 유기준 · 이채익 의원 발의)
- 9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 9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임종성 · 신동근 · 서삼석 · 서형수 · 신창현 · 윤관석 · 전해숙 · 윤후덕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
- 9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안규백 · 유승희 · 김영춘 · 이종걸 · 김부겸 · 박재호 · 김종민 · 민병두 · 조승래 의원 발의)
- 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이찬열 · 강훈식 · 어기구 · 신창현 · 김경협 · 백혜련 · 윤후덕 · 서형수 · 박홍근 · 이정미 · 최재성 · 안호영 · 임종성 · 김병욱 · 송옥주 · 안민석 의원 발의)
- 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우원식 · 박재호 · 서영교 · 김상희 · 강병원 · 이수혁 · 조정식 · 이철희 · 박경미 · 유승희 · 오영훈 · 신창현 · 고용진 · 백혜련 · 최재성 · 유동수 의원 발의)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종 · 박인숙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 · 이원욱 · 김영진 · 최재성 · 이상현 · 박정 · 박재호 · 박병석 · 이수혁 · 주승용 의원 발의)

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김성찬 · 유의동 · 정동영 · 장정숙 · 윤준호 · 김삼화 · 이동섭 · 김관영 · 고용진 · 손금주 의원 발의)

9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 · 윤일규 · 윤호중 · 이후삼 · 김상희 · 김경협 · 안호영 · 김병관 · 설훈 · 이인영 의원 발의)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김경협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1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 · 김영주 · 최인호 · 박찬대 · 김병욱 · 최운열 · 송옥주 · 박광운 · 우원식 · 김현권 · 전해철 의원 발의)

10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10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 · 서영교 · 김현권 · 신동근 · 민홍철 · 권칠승 · 이철희 · 이용득 · 송옥주 · 이종걸 의원 발의)

10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10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김선동 · 이명수 · 홍문표 · 정태옥 · 이종구 · 박덕흠 · 김승희 · 최교일 · 윤재옥 의원 발의)

10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 · 유은혜 · 유동수 · 문희상 · 김동철 · 이철희 · 권칠승 · 정재호 · 강병원 · 표창원 · 노웅래 · 인재근 의원 발의)

10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신창현 ·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 표창원 · 이철희 · 박재호 · 송옥주 · 강병원 · 이용득 의원 발의)

10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박홍근 · 신창현 · 백혜련 · 윤후덕 · 임종성 · 이철희 · 박재호 · 송옥주 · 강병원 의원 발의)

10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병욱 · 안호영 · 임종성 · 김경협 · 정세균 · 윤일규 · 정춘숙 · 강훈식 · 이찬열 · 박홍근 · 신창현 · 조승래 · 윤후덕 · 서형수 의원 발의)

10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안민석 · 이찬열 · 김정호 · 정세균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소병훈 · 김병욱 · 강훈식 의원 발의)

1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신창현 · 심재권 · 박홍근 · 이용득 · 이정미 · 김해영 · 서형수 · 김철민 · 김영호 · 기동민 · 박정 · 민홍철 · 변재일 · 노웅래 의원 발의)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김민기 · 김중로 · 김병기 · 윤관석 · 채이배 · 유승희 · 송옥주 · 이상현 · 정인화 · 송갑석 · 금태섭 · 박병석 · 박찬대 · 민홍철 · 김철민 · 윤후덕 · 손금주 · 장정숙 · 추미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81)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이수혁 · 김철민 · 윤준호 · 김종민 · 신창현 · 이상현 · 이철희 · 윤후덕 의원 발의)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윤종필 · 추경호 · 김순

례·김광림·강효상·이종구·박덕흠·김선동·정용기·박명재·김규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024)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28)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정세균·김경협·윤일규·백재현·전재수·김성환·김병기·김해영·이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15)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노웅래·박홍근·신창현·김철민·조승래·윤후덕·송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26)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이학영·이용득·심기준·윤후덕·윤관석·김경협·민홍철·신동근·김현권·김철민·김정호·전재수 의원 발의)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박찬대·박정·김태년·김해영·서삼석·권미혁·맹성규·김경협·송갑석·이종걸·노웅래 의원 발의)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정·김병기·김상희·이학영·전혜숙·박순자·정춘숙·박완주·제윤경·이철희·백혜련·남인순 의원 발의)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조훈현·이양수·문진국·윤종필·유민봉·안상수·홍철호·김현아·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14)

**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이동섭·장정숙·김종희·주승용·이찬열·임재훈·황주홍·김관영·김동철 의원 발의)

**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기동민·고용진·박홍근·신경민·권칠승·김종민·송갑석·전재수·김병기·신창현·김철민·조정식·

김상희·박선숙·심기준·박정·우상호·정춘숙·채이배·소병훈·인재근 의원 발의)

**1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17)

**1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29)

**12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은·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1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혜련·박찬대·신창현·김병기·금태섭·박주민·김종민·송옥주·이용득·김경협 의원 발의)

**1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김현아·이용득·이종명·신상진·이완영·엄용수·김성원·박성중 의원 발의)

**1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12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이용득·서영교·윤준호·김철민·신창현·김병기·송기현·김태년·노웅래·민병두 의원 발의)

**1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윤후덕·김경협·정세균·정춘숙·강훈식·안민석·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

**13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송갑석·김병기·송옥주·정인화·황희·전해철·표창원·박광은·윤후덕·백혜련 의원 발의)

**1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황주홍·정동

영·윤소하·박지원·김종민·이찬열·유성엽·김종희·장병완 의원 발의)

1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현권·전재수·남인순·김병기·송갑석·박홍근·김영진·고용진·기동민·맹성규 의원 발의)

134.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윤준호·윤관석·권칠승·김두관·김종민·송갑석·송기현·김병기 의원 발의)

1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송갑석·이상현·김병기·박정·신경민·민홍철·기동민·금태섭·신동근 의원 발의)

13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이학영·이용득·심기준·윤후덕·윤관석·김경협·민홍철·신동근·김현권·김철민·김정호·전재수 의원 발의)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찬열·김태년·강훈식·어기구·신창현·김경협·백혜련·윤후덕·서형수·박홍근·이정미·최재성·안호영·임종성·김병욱·송옥주·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7)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성찬·유의동·정동영·장정숙·윤준호·김삼화·이동섭·김관영·고용진·손금주 의원 발의)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20)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삼화·주승용·이동섭·박주선·남인순·원혜영·전혜숙·신용현·최도자 의원 발의)

1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이종구·최연혜·백승주·최도자·이은재·김무성·박주선·김성찬·정병국 의원 발의)

1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위성곤·전재수·김철민·박찬대·김상희·김영호·김병기·노용래 의원 발의)

1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윤한홍·장석춘·신보라·임이자·유기준·김현아·강효상·김학용·강석호·박맹우·김규환·정갑윤·송석준·곽대훈·김세연·이완영·민경욱·주광덕·김진태 의원 발의)

1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장정숙·김성원·이동섭·원유철·유승민·하태경·주승용·지상욱·정태욱 의원 발의)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태년·송옥주·강훈식·유승희·김성수·강병원·강길부·신창현·이철희·김상희·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용득·이규희·서형수·정성호 의원 발의)

146.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동섭·한정애·김삼화·김중로·변재일·문진국·김영호·이찬열·박주선 의원 발의)

14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채이배·이동섭·한정애·김삼화·김중로·변재일·이춘석·문진국·이찬열 의원 발의)

1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신용현·이동섭·정태욱·김관영·김삼화·오신환·김수민·박주선·손금주·유성엽 의원 발의)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성원·김무성·민경욱·정태욱·김종석·홍문표·정유섭·송언석·주호영·이장우·김정재·김순례·임이자·박성중 의원 발의)

**1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은권·정종섭·최연혜·김석기·신보라·윤상직·김기선·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성원·성일중·정태욱·김태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이은권·이현재·박덕흠·추경호·정갑윤·이종구·윤종필·홍문표·경대수 의원 발의)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훈·송옥주·이용득·여영국·서형수 의원 발의)

**153.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정세균·위성곤·윤일규·문진국·김경협·박재호·최재성·윤후덕·어기구·노웅래·이찬열·안규백·우원식·김정호·소병훈·서형수·조승래·설훈·이원욱·정춘숙·강훈식·한정애·김병욱·안호영·김현권·임종성·기동민·송옥주·안민석·박찬대·홍의락·박홍근·김부겸·채이배·신창현·백재현·김성수·이수혁·서영교 의원 발의)

**1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15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전재수·신동근·최인호·이상현·서삼석·김철민·이학영·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15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윤일규·윤희중·이후삼·김상희·김경협·안호영·김병관·이인영·윤후덕 의원 발의)

**1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성일중·정운천·이은재·김규환·김진태·신보라·염동열·권성동·김선동 의원 발의)

**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윤영일·신창현·이석현·윤후덕·전혜숙·박정·조승래·황희·김민기·이찬열·김해영·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23)

**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최연혜·문진국·이명수·김선동·김기선·홍문중·정종섭·김재원·이현승·곽대훈·강효상·윤종필·최교일·염동열 의원 발의)

**1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송옥주·정세균·신창현·최인호·이학영·이후삼·안호영·김철민·안규백 의원 발의)

**1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1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전재수·신창현·박정·임종성·윤후덕·김민기·신동근·이석현·안호영·이찬열·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07)

**1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영호·신창현·김종민·민홍철·맹성규·정춘숙·이학영·김종대·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1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이찬열·강훈식·어기구·신창현·김경협·백혜련·윤후덕·서형수·박홍근·이정미·최재성·안호영·임종성·김병욱·송옥주·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8)

**1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황주홍·정동영·윤소하·박지원·김종민·이찬열·유성엽·김종희·장병완 의원 발의)

**1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경대수·김수민·이학재·유성엽·강훈식·정인화·장병완·황주홍·정동영·최도자·윤준호·이찬열 의원 발의)

**1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박재호·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33)

**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



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정진석·박덕  
흙·성일종·김상훈·김용태·정태욱·박  
맹우·주광덕·김정훈·김광립·박완수·  
윤재욱·이채익 의원 발의)

**1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  
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  
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17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  
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석·이찬열·김  
정호·정세균·윤후덕·안호영·임종성·  
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원 발의)

**1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안민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  
덕·안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  
훈식 의원 발의)

**17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윤  
상직·주호영·이명수·김도읍·경대수·  
김중희·송희경·원유철·박맹우 의원 발의)

**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  
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  
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  
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17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민  
석·이찬열·김정호·정세균·윤후덕·안  
호영·임종성·소병훈·김병욱·강훈식 의  
원 발의)(의안번호 18924)

**17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  
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  
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철민·  
김민기·노웅래·박홍근·신창현·조승  
래·윤후덕·맹성규·한정애·송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28)

**1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영  
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  
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  
원 발의)

**1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기동  
민·김영호·김정우·박찬대·서삼석·윤

소하·이후삼·임종성·전해철·조승래 의  
원 발의)

**1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상  
현·유승희·원혜영·강창일·김종민·이  
규희·신창현·이정미·이용득·정세균·  
한정애 의원 발의)

**1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성  
수·기동민·김상희·강창일·안호영·송  
갑석·김해영·이용득·이학영·이후삼·  
이종걸 의원 발의)

**1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  
표발의)(전현희·김성수·기동민·김상  
희·강창일·안호영·송갑석·김해영·이  
용득·이학영·이후삼·이종걸 의원 발의)

**1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병  
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  
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철민·김  
민기·노웅래·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  
후덕·맹성규·한정애·송기현 의원 발의)

**1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  
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성환·금태  
섭·노웅래·민홍철·신창현·심재권·이  
상현·이용득·이후삼·정세균·황주홍 의  
원 발의)

**18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  
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조승래·서형  
수·박재호·최재성·김종훈·전재수·신  
동근·박용진·윤호중·최인호·이학영 의  
원 발의)

**1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  
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김경  
협·김병관·김정호·박재호·백재현·윤  
후덕·이상민·이석현·이종걸·이찬열 의  
원 발의)

**1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  
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심상  
정·윤소하·추혜선·송옥주·여영국·이  
용득·이후삼·김종훈·서형수 의원 발의)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박명재·이종배·신보라·김명  
연·김세연·이명수·안상수·박성중·윤  
재욱·주호영·박덕흠·백승주·김정재·

황영철 의원 발의)

**1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송영길·박찬대·김병기·이수혁·어기구·이규희·송갑석·신창현·최재성·이철희·홍의락 의원 발의)

**18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은권·정종섭·최연혜·김석기·신보라·윤상직·김기선·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성원·성일중·정태욱·김대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18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이학영·이용득·심기준·윤후덕·윤관석·김경협·민홍철·신동근·김현권·김철민·김정호·전재수 의원 발의)

**190.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유은혜·유동수·문희상·김동철·이철희·권칠승·정재호·강병원·표창원·노웅래·인재근 의원 발의)

**19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성환·금태섭·노웅래·민홍철·신창현·심재권·이상현·이용득·이후삼·정세균·황주홍 의원 발의)

**192. 간호조무사 종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에 관한 청원**(설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9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94.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5.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6.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7.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8. 현안보고(인천 수돗물 등)**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1시07분)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2항까

지 191건의 법률안과 청원, 의사일정 제193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4항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5항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6항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7항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98항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안녕하세요? 이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막채배를 하는 많은 농가에서 허가와 신고 후에 적산유량계 등을 제거하거나 동파, 고장 등의 이유로 교체 사유가 발생하여도 교체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의 이에 관한 관리 감독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유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시 신고한 내용이 허가 등의 내용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준공확인증이 있는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허가·신고요건 준수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설의 적정성 확보뿐 아니라 지하수 이용량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하수의 과다 이용 및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과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처음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요 환경현안의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8개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기업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양도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실과 학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받는 시설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는 많은 비가 와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적정한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강우 미처리 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강우 미처리 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강우 시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하수관리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법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의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8개의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됨에 따른 긴급한 재정조치입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631억 원 증액한 5조 750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조 169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세출예산 증액 규모의 91%인 1조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후 경유차와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 감축 7016억 원, 과학적인 측정·감시체계 구축 902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국민건강 보호에 411억 원 등 미세먼지 대응에 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상하수도 개량사업 등에도 10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환경현안 중 시의성이 높은 두 가지 현안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인천 공촌정수장의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

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일부 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사고 이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가정의 경우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상태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돗물 수질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별 추가 방류와 청소 등 개별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조속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급·배수관망의 사고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수관망의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제철소 오염 배출에 대한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제철소 고로 정비 과정의 오염 배출과 최근 제철소 정전으로 인한 다량 오염물질 배출 등 연이은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사고로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현장 실측과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작년 3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 임명된 환경부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입니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영훈 물통합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과 2건의 환경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참고로 작년 3월이 아니라,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 3월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기초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환경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박광석** 환경부 기초실장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개요,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 편성 방향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8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서 관련 분야에 긴급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가속화라든지 국민건강 보호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을 포함해서 노후 상하수도 시설 개량 등 환경안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9631억 원 증액한 5조 7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조 1691억 원이 증액된 8조 9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 보시면 일반회계 88억 원 증액, 환경개선특별회계 9631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본예산 대비 기후대기·환경안전 분야에 72%가 증액이 됐고, 자원순환·환경경제 분야에 11.7%, 물환경·수자원 분야에 본예산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1조 6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사업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 경유차 조기퇴출이라든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조기폐차 예산에 2400억이 증액되었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분야에 1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927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1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 교체를 지원하고, 특히 도로에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측정·감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역사 등에 대해서 미세먼지 개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배출량의 감시 등을 위해서 3차원 추적장치에 95억 원을 편성했고 분광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에 2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측정을 위해서 국가측정망에 135억 원, 지자체 측정망에 29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차 보급과 관련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시행에 따라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10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차 및 관련 충전시설에 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환경기업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관련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1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94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197억 원,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천안 인근이 되겠습니다—48억 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의 신뢰성 제고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 추경 신규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건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수돗물 문제와 제철소 오염물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선 인천 수돗물 사고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사고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촌정수장의 일시 가동중지로 인해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일부 지역에 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5월 30일 상황이고요. 검단이나 청라 등 주요 서구지역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체계적인 배수조치가 미흡하여 사태가 장기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 불편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인천시, 환경부 등이 협력하여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정부에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였고, 6월 7일 날 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6월 21일부터는 수돗물안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에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8쪽입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표준시방서에 수계전환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계전환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밸브 개방으로 10km 정도의 역류구간이 발생해서 물때가 탈락하였습니다.

관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거의 20년간 세척을 하지 않아서 관저부에 물때가 장기간 가라앉는 일이 벌어졌고요. 초기에 체계적 배수조치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정체구간이 침전되고 부유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배수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공촌정수장 정수지하고 배수지에 대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수관로 배수 작업도 추진하였고 급수구역별로,

특히 주요 민원 49개 지점에 배수 작업 중에 있고 관의 끝 지점에 대해서, 160개 지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별로 수질을 분석하고 필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체감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끝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안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인력 23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수도물의 정확한 실태라든지 분석을 실시해서 매일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의 블록별 수질 분석이라든지 필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학교의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전국의 161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계전환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인천 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백서를 발간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7월경에 안을 마련하고 금년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물 적수 발생 시의 대응절차 마련 등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계전환 및 관로 공사 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식용수 사고의 모의훈련을 개발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망 관리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물, 물때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관 세척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망 유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관련입니다.

근래에 고로 정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정전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제철소의 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경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시도, 지방청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결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6월 19일 날 민관협의체를 발족시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와 영산강환경청에서 사고 당일 현장 확인을 했고, 사고 전후 측정망 분석 결과 주변 대기환경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브리더 같은 경우에 주요 쟁점이 저감기술이 존재하느냐를 두고서 이견이 존재합니다. 측정을 해 본 결과, 특히 드론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 배출 규제라든지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업계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여건, 특히 저감기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업체의 사과와 근본적인 오염물질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정전사고 관련해서는 비상시, 정전이 비상사태였습니다만 비상 상황에 미처리 배출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밸브 상단의 연소장치, 플레어스택이라고 하는 데서 배출가스를 처리했습니다만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2만<sup>m</sup>가량의 배출가스가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8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추가 측정을 하고 또 외국 제도 등을 토대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전사고 관련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발전시설이라든지 플레어스택의 용량을 확대하도록 해서 7월 9일 날 관련기관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은 고로 공정이랑 정비 절차의 내용입니다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개정 채용절차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총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928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 2000명 확대하겠습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훈련 과정도 확충하겠습니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1만 명 늘려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 명 추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생계비 대부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노출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재할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해 드리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최대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용 지원,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운임 인상, 근무체계 개편,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내에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가 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과 최저임

금위원회의 기능 강화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홍보,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노동계의 과업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큼니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3월 국회 이후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추경예산안 내용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추경예산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주요 현안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안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경덕입니다.

우리 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생경제를 지원

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총 17개 사업 1조 3928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92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에 1조 3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9만 8000명에서 13만 명으로 3만 2000명 추가하였고, 해외 취업 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1000명분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폴리텍대학에서 실시하는 경력 단절여성 특화훈련과정 인원을 550명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청년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각각 1만 5000명, 7000명, 3000명씩 확대하는 등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78억 원,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8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에 대응하여 구직급여 예산을 8214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30~40대 실업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2만 1000명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예산 155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도 7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을 900건 확대하고,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 등 예산도 2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노동자 건강 보호 및 산재 노동자 지원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노출이 빈번한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



훈련시설에 공기청정기 등을 보급하는 예산 32억 원도 포함하였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복지를 지원하는 예산 85억 원과 진폐로 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한 위로금 예산 333억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표 및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고용노동부 현안보고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고용노동 동향,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18페이지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별적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계도기간 내에 인력충원, 노사합의 등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필요 시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강화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면 정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인상 수준을 감안하여 현장안착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산업안전보건법 후속조치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원청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전문가 및 노사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요 규정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개정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최근 잇따른 노동단체 파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주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있었습니다. 학교·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교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사 간 대화를 지원하는 등 교섭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전국우정노조 파업,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노동현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9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기상청의 주요 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상청은 올해의 정책목표인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레이더 자료와 CCTV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융합하여 실태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집중호우 조기전달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6시간 이내의 초단기 위험기상 감시와 예보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문제 대응과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술 선진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시에는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으로 실시간 기상관측·예측정보를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천리안위성 2A호의 정식 운영이 실시되고 슈퍼컴퓨터 5호기의 초기분 도입이 추진되는 등 기상인프라 역시 확충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지진 진동 도달시간과 체감 진동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 재난문자 송출 영역도 확대되어 기상청의 지진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날씨누리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과 실시간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를 위한 푸시 앱(Push App)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201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여 인공강우 국제공동연구 및 기상관측용 드론 도입·운영 등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기상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득균 관측기반국장입니다.

김남욱 기후과학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경예산안 개요, 추경예산안 세부현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기상청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기상재해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기상정보를 지원하고 인공강우 기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기상청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 원을 증액 편성한 3908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현황입니다.

위험기상 현장대응용 드론장비 1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6억 원을 투자하고 선진국과 인공강우 공동실험과 실험장비 구축에 18억 원, 인공강우용 대형 기상항공기 도입 연구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와 인공강우 실용화 기반 마련이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2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기상청장님, 지난번에 3부 축구대회 때 족집게 예보한 것처럼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청장 김종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날 딱 1mm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1mm 미만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0.99mm 왔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8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이용득 의원님 안, 김동철 의원님 안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포함한 각 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내년도 개관 예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정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원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국민신탁활동의 주체로 국민신탁자치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민간 차원의 국민신탁운동 활성화가 기대되나 자치법인의 지정절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임이자 의원님 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운영할 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형 제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방식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 자원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설훈 의원님 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자연환경 침해 방지 및 보상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용득 의원님 안은 국가생태축, 광역생태축 및 지역생태축의 설정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시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 기준에 현행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권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자원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의 우려와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관계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이장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의 이행방식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폐자동차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관계부처나 관련 산업계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 하수도법 일부개

정법률안 5건 중 임이자 의원님 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에 관한 현행 환경부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미인증 제품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김동철 의원님 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벌칙의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한 추경편성은 미세먼지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적절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 여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 규모에 따른 금년 내에 실제 집행 가능 여부, 사업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90항부터 192항까지 10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직자 취업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소득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취업지원을 받는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 수준이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준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추가 재정 부담 발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박광온 의원안, 임이자 의원님 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송옥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검증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중 설훈 의원님 안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근로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 조항 및 형법의 사기죄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에 신보라 의원님 안은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유급 주휴일 보장 의무를 노사합의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휴일 관련 규정의 연혁과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강행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정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 개발계좌 발급 신청인에게 직업능력 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직업능력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하단에 남너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신창현 의원님 안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에 대해서 교육과 무관한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타당하고 타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과태료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기본권과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법안

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교육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김학용 의원님 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노사자치의 확대 및 협약관계의 안정화 도모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경제상황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행 유효기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전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쪽에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고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청년의무고용 비율 상향은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기업에게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서 1쪽에,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한편 2017년 4/4분기 및 2019년 1/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경안 편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경우 회계연도의 4분의 1만 경과한 시점에서 편성되어 본예산의 집행추이를 감안하기 어려웠고 제출시기와 심사시기의 차이가 커 제출시점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의 집행기간이 축소되는 등 실제 집행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한 의견은 유인물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 순서입니다.

○**강효상 위원**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예, 자료 요청하실 분들 하세요.

○**강효상 위원** 강효상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요새 붉은 수돗물 사태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제가 그래서 최근 5년간 붉은 수돗물에 관한 발생 등 관련 통계 그리고 노후 수도관 문제로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발생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별도 통계 보유 자료가 없다’ 이게 물통합정책국입니까? 여기에서 담당자가 ‘통계 보유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통계가 없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통계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큰 틀에서는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붉은 물이라는 명칭이 본격화된 것이 이번 사건이고요. 적수인데, 적수가 붉은 물입니다만 그 원인으로 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적수 사고와 관련된 통계만 집적해 놓은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노후 수도관 문제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통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리고 수도법 제74조에 의하면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것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머스트(must)로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광역 시도별 최근 실시한 기술

진단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보유한 자료가 없다’ 또 이렇게 답이 왔고요. 문제가 된 인천에 관한 기술진단 보고서 요구했더니 역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인데 자료가 지금 구득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사연인지 제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오후라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 간단하게 지금 세종시의 날파리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세종시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서로 핑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혹시 갔다 온 자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특별히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직원들 조사차 나갔던 일 있으면 그 조사결과 또 누가 나갔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아직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안 하셨지요? 못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물관리위원회에 추천되신 분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줄 수 없다라고 해요. 줄 수 없는 것인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지금 구성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이자 위원** 아니, 추천 위원들 어차피 추천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분을 사전에 국회에서 먼저 검증해 보겠다는데 그 추천 명단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그 자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자료라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의 개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은 저희 부로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 위원** 청와대 소관이기 때문에 못 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한번 요청을 해서 저희 방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래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자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 하면 당연히 결과가 있을 텐데, 어떤 실무자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보냈는지 장관님 이따가 보고받아 가지고 저한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만약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그렇게 공무원이 업무 태만으로 안 한다면 그것은 징계 사유지요. 이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게 더 없으면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질의하시는 위원님 좌석 위치를 고려해서 마주 보이시는 반대쪽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위원님이 잠깐 이석 중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붉은 수도물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마는 우리가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안 줬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오후에 자료 구득 가능하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담당 국장 나와 보세요.

5년마다 한 번씩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리 감독이 돼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물통합정책국장입니다.

진단결과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대로, 만약에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조치를 명령하고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각 수도사업자가 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관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그 진단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제출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임이자 위원** 환경부에서는 수도물과 관련돼 가지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일단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임이자 위원** 수도법 제2조에 의해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일단 지자체에 고유사무로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환경부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무의 위치에 있는 것 맞지요?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그 기술진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맞지요?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인천 관련돼 가지고는 98년 매설 이후 22년간 세척을 하지 않아서 관저부에 물때가 장기간 침전됐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점에. 그러면 이것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유지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지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위원님, 저희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명령하지만 그 실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제대로 청소를 하는지, 정비를 하는지 이 부분까지는……

**○임이자 위원** 아니,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제대로 기술진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른 부분,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재라 그러고 저희들은 관재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

지금 서울 구로 같은 경우에 또 서울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파악돼 있습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무슨 원인입니까?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관저에 있는 침전물이 관이 흔들리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 갖고 있어요?

**○환경부물통합정책국장 김영훈** 예, 자료는 저희가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장관님, 이제는 우리가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도 환경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자체에다 맡겨 놓다 보니까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적수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는—하수도도 마찬가지로—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도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돈을 들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들이지만 국민은 국민대로 수도물 안 먹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수도물을 먹고 있는 국민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1~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수도물 공급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수도물에서 건강한 수도물로 바꾸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무 인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인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인재라고 그러셨습니다, 인재. 우리는 매뉴얼이 부재한 것을 관재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수도나 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겠습니까마는 거기에 거쳐 가시는 지자체의 공무원들 대부분 보면 제대 말년이에요.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제대로 관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매뉴얼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 노후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후관 관련돼 가지고는 노후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법상으로 개념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정량적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론 회계 처리상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아주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데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20년이고 강철관 같은 경우는 30년이지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40년, 80년까지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뭘니까? 유지관리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도 나와야 되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해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에 상수도뿐만 아니고 가스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 개념이 적용되는 데도 있고요, 예컨대 스마트 워터 시티 개념도 있고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개념도 있는데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가 지금 추진할 참이고요. 그다음에 단위 지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과주에서 시범사업을 2016년까지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음용률이 3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런 부분에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관리계획 새로 짜고 매뉴얼 새로 짤 때 이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9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환경소위로,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192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고용노동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3항부터 제197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이고 발언 마무리 시간 1분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집배원 사망자 현황인데요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딱 1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통사고도 있고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도 있고 암도 있고 자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것들이 다 과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집배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우편물의 경우 몇 통인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1000통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등기우편물은 몇 통인지 모르시지요? 100통이고요. 택배는 50개입니다. 집배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기본 물량입니다. 구로우체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장관님, 집배원이 우편물 한 통을 돌리는 데 운영사업본부가 소요 시간을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초입니다. 등기우편물 한 통 주고 서명받고 오는 데 몇 시간 주는지 아세요? 28초 줍니다. 택배 30초 줍니다.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건가요, 기계한테 시키는 건가요? 제가 정말 노동부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지요.

올해 6월까지 9명이 죽었습니다. 과로사도 있고 또 골수백혈병도 있습니다. 심정지, 심장마비 이런 건 다 우리는 과로사로 봅니다. 심혈관계 질환이지요. 아니, 2초에 한 통씩 우편물 나르고 28초에 등기우편물 하나 주면서 서명받고 30초에 택배 하나 배달하는데 일하다 안 죽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2010년에 259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맨 밑의 2018년 보세요. 781건입니다, 장관님.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만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3배씩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로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토바이 사



고도 과로지요. 정말 죽음의 행렬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 이거 특별근로감독 좀 하자……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일했는데도 수당 지급 안 해 가지고 그것 찾아내서 이십몇억 수당 지급한 것,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겁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정부라고 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민간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간에 이렇게 죽어 나가는 데도 노동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17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실시한 바에 따라서 2017년부터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작년 10월 달에 합의했습니다, 7개 사항. 그 핵심이 첫 번째가 인력 증원, 왜? 둘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다 죽으니까 둘이 할 일 둘이 하게 만들자, 그러면 안 죽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원래 직무분석으로는 285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2000명 증원에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2019년에 1000명 그리고 2020년에 1000명.

그런데 19년에 1000명 예산은 잘 아시는 대로 부결됐습니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야지요. 우정사업본부 추경에도 요청 안 했습니다. 그건 우정사업본부하고 할 얘기지만 저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그렇게 죽어 나가는 데도, 그래서 증원하기로 작년에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예산 379억 증액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소소위에서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넣자는 얘기를 그래도 노동부장관이면 한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위원님,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최근에 우정사업본부 경영 환경이 많이 악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에 과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원만하게 합의 안 되면 특별근로감독 들어가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집배원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공무원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을 이따 오후에 속개할 때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개정안 내려고 그래요. 공무원도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제가 납득하기 곤란하니까 일단 그건 근거규정부터 확인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다음 화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처리 결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징역 2.2%, 금고 0.7%, 집행유예 33.4%, 벌금 57.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과 통계입니다. 재범, 3범, 4범이 아니라 9범 이상 426명이나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얼마나 솜방망이면, 우습게 보이면 9범 이상이 400명이 넘습니까?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열 번을 한들 그게 어떻게 산재가 줄어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산재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반으로 줄겠습니까, 9범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벌금 1000만 원 내고 끝나는데 누가 돈 1억, 2억, 수십억 들여 가지고서 산재 예방을 위해서 설비투자하겠습니까?

벌금형 보세요. 개인은 평균 420만 원, 법인 평균 447만 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산재 줄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정말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온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런 측면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벌금액을 상향하고 또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하고 있는 그 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나머지 얘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신창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배원들 제가 봐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환경부장관님, 인천 수돗물 사태를 보건대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뉴스 보도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예견된 사고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법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전체다 이전이 됐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보라 위원** 그래서 전체 통합 관리주체가 환경부이고 수도법에 따르면 여러 수도에 대한 국가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지방상수도사업의 지도 감독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연 1회 지방상수도사업자의 실태점검을 환경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T 보시면 인천시 상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상수도 위기대응능력 배점 5점 만점, 인천광역시 5점 받았어요.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의 대응 매뉴얼과 사태 수습이 거의 0점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상수도 위기대응능력에 5점 만점을 줬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 적수 사태는 아시다

시피 수계전환에 따른 것인데요.

○**신보라 위원** 그것도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시는 그동안 수계전환을 수십 번 했고요. 올해도 세 번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공촌정수장 수계전환을 할 때는 왜 매뉴얼을 안 지켰는지에 대한 것이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인 조사를 해서 대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테면 고장난 탁도계 같은 것이 왜 처음에 확인이 안 된 건지……

○**신보라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됐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능력 정도를 테스트할 때는 확인됐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수계전환을 할 때는 운영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이 사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장관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환경부 담당자는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운영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사무실에 운영 매뉴얼이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을 해 왔다, 그래서 이런 배점이 나온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런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실태점검은 형식적인 점검만 해 왔다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어요, 장관님.

장관님은 위기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그동안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수계전환을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담당자는 운영 매뉴얼이 어떻게 비치돼 있는지 정도를 확인해 왔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장관님, 담당자로부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진짜 형식적인 점검을 해 왔다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보시면 노후관로 개량실적도 배점 8점에 4.8 정도에 불과했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 부분도 보시지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산·공촌 정수장 내용 보시면 수산정수장도 2명 이상 1급, 2급도 3명 이상, 3급도 5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 1명, 4명밖에 되지 않았고 공촌정수장도 1급 관리사는 아예 없어요. 2급 관리사도 3급 관리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조항에 대해서 보면 부족하게 관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 오고는 있지만 환경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규정상으로 보면 특별히 페널티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을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느냐를 들여다 보더라도 페널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태점검 관련한 내용도 보면 실태점검하고 나면 포상금 지급이랄지 표창 이런 인센티브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지자체장이 이 문제를 정말 개선해야겠다는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옳은 지적이시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인천 적수사태를 정리하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참입니다.

○**신보라 위원** 환경부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제 지도 감독 권한이 행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행사되지도 않고 그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규정으로 어떤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용수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환경부가 갖고 있는 표준 위기관리 매뉴얼의 일부분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쨌든 적수가 발견됐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이 표준매뉴얼이 작동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니다.

○**신보라 위원** 왜 안 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왜냐하면 조사는 여러 가지 환경재난이라든가 시설 파괴라든가 등에 의해서 수질이 심대하게 오염돼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또 급수가 중단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촌정수장 수계전환은 수질기준은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 않았습니니다. 또 그리고 급수는 계속되기 때문에 저 매뉴얼에 따른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식용수 사고 발생 유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가 제대로 준수를 안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보라 위원** 그것은 수계를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해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수돗물을 아예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피부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노여워하는데 이게 식용수 사고 매뉴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예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에는 특히 수질기준에는 맞지만 주민들은 필터의 색을 보고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음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태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으면서도 색깔에 의해서 음용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정 기간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일종의 교훈으로……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거네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물 문제인데, 마지막 앞에 하나 보시지요. 환경부가 지난 2018년에 블로그 카드뉴스로 내건 내용이예요. ‘수돗물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2018년에 환경부 블로그로 직접 올리신 내용입니다. 지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자랑하듯이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서 결국에는 이런 위기대응에 있어서는 매뉴얼도 없었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상수도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이번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번 적수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가 주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보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대책 보완해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해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께서 지금 이석 중이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건강상태가 썩 좋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문성현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1차 질의를 이용해 주시고 1차 질의 끝나면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노동부장관님, 지금 금년 성장률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4% 내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것은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장우 위원** 우리 장관께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할 때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장우 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이 났던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 재정지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하면서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분기 한국 성장률이 -0.4%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장우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10년 3개월 만에 한국 성장률이 -0.4%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관께서는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정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고.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0.4%,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국가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마 단기 성장률로, 분기 성장률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나온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지요?

그러면 5월 산업동향에서 생산하고 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습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투자는 마이너스가 확실하고요.

○**이장우 위원** 생산은 어때요? 생산도 마이너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생산도 조금 마이너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업의 재고율이 118.5%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도 1971년 이후 최장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14만 5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후에 최대치고 한국 경제의 허리인 삼사십대 취업자는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장관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반기 재

정집행 확대와 수출·설비 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5월 7일 날 하신 얘기예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다 최악이지?

거기애다가 우리 장관이 가장 제대로 봐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2년 사이에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71만 5000명이나 감소했고, 이 얘기는 양질의 일자리는 71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는 뜻이고 주 36시간 미만은 100만 5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단기알바 일자리 이런 것만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 취업자와 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됐다고 말씀하는 현 정부의 상황 인식, 시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3월경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 비해서는 지금 시점이 하반기의 하방 가능성이 훨씬 더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라 저는 경제에 대한……

**○이장우 위원** 장관님, 제가 볼 때는 국제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하고 주 52시간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인건비 부담, 기업 경쟁력 약화,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감소, 정부 재정지출 증가, 국민들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서비스요금·외식비 등 생활물가 증가,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만 어려운 상황이 됐고 대기업 근로자, 공직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이런 데에 근무하는 분만 먹고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이 문제는 추가질의 때 저하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환경부장관님, 날파리 때문에 세종시가 난리 난 것 아세요, 모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들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정식으로 보고는 받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언론을 통해 보고받았어요, 환경부장관이?

지난 6월 10일 날 날파리 문제가 세종시청에 최초 민원 접수가 돼서 세종시 장군면 일대 수만 평으로 추산되는 밤나무단지 내에서 발생했다는 추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방역도 잘 안 되고.

세종시청은 음식물 탈리액 아니면 비료 둘 중에 하나가 원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게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방역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나무농장에서 액상비료를 운반하는 업체 여기에서 원인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요청했고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상비료를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방역은 세 차례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종시 일대 전체가 난리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요. 지자체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이것 세종시 차원에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수도물 문제가 인천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 철저히 대책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강효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6월 28일 날인가 제출했는데 아마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열지 못해 가지고 다시 요청해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강효상 위원님 됐습니까?  
 ○강효상 위원 7월 1일 날 들어왔다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데……  
 ○환경부장관 조명래 6월 24일 날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6월 28일 날 9시 3분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또 제출한 것은 7월 1일 오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자료 없다고 답변이 온 게 이게 7월 1일 날 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어떻게 된 겁니까?  
 ○강효상 위원 이따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확인하는 걸로……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시에서 제출받아서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저희 부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자료는.  
 ○강효상 위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또 하나, 자료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청와대에서 구성을 하겠지만 추천해서 취합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요,물관리 위원들 추천하는 부분을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그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초안이고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의사를 우리가 듣지 못했고……  
 ○위원장대리 임이자 그러면 한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위원장대리 임이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청와대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장관께 분명히 요청하는데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어떤 갈등이 초래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권 때는 찬반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 때는 아예 찬반을 배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가지고 물관리위원회 구성하

실 때에 반드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국회의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인천……  
 ○설훈 위원 그다음에 나 아닌가?  
 ○위원장대리 임이자 이것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문진국 위원님이 안 오셔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장관님은 이 사태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단은 현재 여러 가지 범상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일차적으로는 지자체 책임입니다.  
 ○강효상 위원 환경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닙니다. 저희들도 포괄적인 관리 감독, 수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특히 장기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특히 장기화된 노후 수도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정기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희가 상수도 통계 2018년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관의 전체 길이는 20만 9000여km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년을 초과한,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전국적으로 평균 32.4%나 될 정도로 수도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약 54.8%, 대

구는 56.8%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이 20년을 초과한 노후 수도관으로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노후 수도관의 20년 초과된 평균 비율이 44.2%나 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생기고 또 이런 노후 수도관 누수 현상이 생기면 국민들이 전부 불안에 떨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단수 문제, 여러 가지 식수 문제 이런 것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굉장히 복지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이 복지나 이런 데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과거 MB 때 했던 SOC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정부가 골고루 국민들의 생활을 촘촘히, 공고히 챙겨야지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느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런 사회간접자본(SOC), 사회 인프라에서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노후 수도관 교체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0.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 수도관 비율이 전국 가장 최고인 대구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사이에 노후 수도관이 대구에서 파열되어서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지금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160건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후 상수도관이 전체의 약 10%인 77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구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붉은 수돗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어떤 한 지역에서 수돗물 이물질 신고만 약 1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는 여름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노후 수도관 교체의 경우 1km당 교체 공사 금액이 약 4억 원으로 대구시에서는 추정하고 있어서 이것

을 다 교체할 경우에는 약 38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이런 전국에 있는 노후 수도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은 크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할 만한 그런 물량이라든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어느 정도 양호하냐를 판정할 때 연수 가지고만 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상수관의 종류별로 이른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용연한이라고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20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내용연한이 지난 상수망의 비중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번 적수 사태가 터졌던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5%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도,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상수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103군대를 선정해서 국비를 최대한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까지 합치게 된다면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광역, 그다음에 광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국고 지원을 안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통해서 노후 상수관에 대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6년에 한 3332km 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17년부터 18년 사이에 1700km의 노후관 정비를 했습니다, 59개소고. 22년부터 28년 사이에는 1621km에 대해서 국고를 투입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사업들을 찾

고 또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이자 예, 마무리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기상청장님  
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  
습니다. 지금 올해 벌써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  
로 폭염으로 인해서 약 190명의 온열 환자가 발  
생을 했습니다.

폭염은 작년, 제작년부터 심각성이 이미 예고  
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장님, 이번 추경에 폭  
염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이번 추경에 폭염 예산은 반  
영 못 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것은 반  
영을 하지 않고 그냥 시설 투자에만 신경 쓰시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만 해도 35도 이상인 날이 작년에는  
29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7년에는 18일에 그쳤는데요. 이런 폭염에 대  
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지금 저희들이 폭염영향예보  
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월부터 폭  
염영향예보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대학교에 폭  
염 특구지역으로 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단순하게 추경에만 반영 못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구를 설훈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환경부 측에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한 22%  
가 경유차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유  
차가 결국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중의 하  
나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타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경우에 승합차로 바뀌면서 타다만 하더  
라도 1000대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전부 다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경유를 이용해  
서 쓰는 자동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00%  
경유차입니까, 아니면 일부……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100% 경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100% 경유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설훈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다 자체가 위법이나  
적법이나 가지고 따질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은 타다에서 나오는 승합  
차를 다 경유차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드는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  
적으로는 1000대, 그리고 ‘파파’도 지금 시범 운  
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1000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만  
들어 놓으면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그러면서 정책  
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있는  
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  
요.

저도 수도권 미세먼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고 있  
는데 적어도 이런 승합차를 운영하겠다는 데 있  
어서는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적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  
줄이는 데 정책적으로 모양새가 같아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경유차를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상하게 뒤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입  
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지  
계획 있으면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사실 지금 타다는 업무 영역으로 보게 된다면  
국토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  
극적인 입장을 못 취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  
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다 경유차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체 차종을 우리가 제안해 주  
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지금 대체 차종이 마땅  
치 않기 때문에 저희 부로서도 어떤 입장을 내기  
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



해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라든가 택배 차량이라든가 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법 속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경유 타다 차의 경우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중기적으로는 LPG 차량이라든가 다른 차로,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승합차에는 친환경차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회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와 꼭 상의해서 정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지금 몇 대 정도 달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국내 시장에 전기버스가 한 157대 공급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이 붙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3억 가까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국산 차와 외국 차—중국 차가 주로 되겠는데—중국 차와 국산 차 비교를 해 보면 중국 차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 차가 국내 시장을 굉장히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조금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국산 차와 외국산 차를 똑같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차는 저가이기 때문에 중국 차만 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손을 봐야 된다, 이를테면 국산부품 장착 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보조금 지급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국산 차, 중국 차 똑같이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중국산 차에 그냥 다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 입장…… 물론 이것도 국토부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전기차나 혹은 수소차를 보급해야 하는 저희 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친환경차 보급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환경산업이 육성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전기버스 보급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중국과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된다면 일종의 보조금을 차등하여서 지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차량 판매가에 따른 특정 국가 보조금 차별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생산 가격을 낮추고 보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중국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국토부와 상의해서 전기차를 권장하되 국산 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문제인데 수돗물 먹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수돗물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맡겨 놓은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에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시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놓고 국민들이 수돗물 먹을 수 있고 생수를 안 산다고 치면 엄청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돼요.

특히 지방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시설 투자,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시설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 해서 지방정부가 수도 사정을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해요. 1%, 2%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먹어요.

이것 먹게 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책은 참 잘되었구나, 먹는 물로 바꾸었구나 이걸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이걸 해내야 될 작업이니까 환경부가 특히 지방정부에 돌려놓은 정책을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방법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이 변화 없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정부로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관리 감독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조금도 저희들이 많이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실효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상수도 관련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또한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과주시에서는 과주시하고 수자원공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16년까지 한 4년간 했는데 거기는 음용수 음용률이 37%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50% 가까이까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 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설 교체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관망 관리가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망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로 문성현 위원장님이, 없으시면 이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오시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환경부장관님,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돗물 사태가 진전 국면으로 들어서지를 앓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신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과 검암동의 수질이 정상화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서구 수돗물에서 흠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또 일부 학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수돗물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불안감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는 느낌이고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도의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수돗물을 다시 믿고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각 가정으로 보낼 때 염소를 사용하는데 이 염소는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철재 배관의 부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트리할로메탄도 염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염소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염소에 대한 사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염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존처리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수장의 유입원수가 깨끗하면 간단한 오존처리 방식으로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배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이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염소 사용 방법 혹은 사용의 정도 이런 등등은 여전히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물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염소 사용은 일정하게는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오존처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면 이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계전환 과정에 의한 부주의로 꼽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니까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된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하고 이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니 특별시와 광역시는 9.5% 그리고 시 단위는 6.3%, 군 단위는 3.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개선사업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와 관련되어서 인천은 관로가 21년이 되었고 서울 문래동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수계전환 과정에서 수압이 올라가자 불순물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관로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수도정비계획을 보면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관의 현황 조사나 개량, 교체 그리고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고 있는데 청소 주기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청소 주기를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으로 상수 관리에서는 사실 노후시설의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10년 이하의 관에서도 부유물질이 5~30% 나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 세척을 포함한 관망 유지 관리를 중요한 대책……

○**송옥주 위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청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천 방안은 없어서 혹시라도 있으면……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앞으로 그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게 지금 그냥 세우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수돗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적인 정부의 업무인데요. 환경부가 지자체로 업무를 위임 또는 이관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수돗물의 수질 정보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환경부에 마련되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주요한 수질기준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수장, 배수장, 배관, 송수관, 급수관 등등에 따라서 주기의 정도가 다르고 그것은 홈페이지에 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전국의 수도배관 등 지하 구조물 등에 대한 위치라든지 반경 등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다 되어 있다고는 대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송옥주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과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긴급대응 부서라든지 모니터링 부서 그리고 또 부식되고 오래된 수도관 개선사업 등 부서별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보도 잘 공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부서로 전환된 상태에서 환경부가 이제야말로 국민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이번에 적수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명목적으로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초기에 일찍이 대응

을 했습니다. 대응도 하고 또 이를테면 우리 전문가들도 6월 3일부터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이렇게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 환경부가 이와 같은 사태에 초기부터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서울 강서 병 출신 한정애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3월 25일 날 농림부에서 낸 설명 보도자료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축산 분야의 암모니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환노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농림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에 대해서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가축의 배설물에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림부에서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 축사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미생물제제를 가축에게 급여하거나 또는 축분에 살포를 해서 암모니아의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보면 암모니아는 질산이온으로 분해되어서 실제로 암모니아의 발생을 저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저감이 맞지요, 저렇게 하면?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질산이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는다고 봐야 되지요.

○**한정애 위원** 질산이온은 또 다른 미세먼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인자이지요. 다시 말해서 냄새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시겠지만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화하거나 하는 사업을 이미 포기해 버렸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모니아 냄새를 죽이는 미생물을 투입해서 그냥 부숙한 퇴비를 만

들어서 토양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또 과영양화가 되어서 이게 비가 오면 수계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러니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질산이온의 형태로 계속 만들고 있고 토양은 과영양화를 시키고 비가 오면 수계는 더 오염이 되는 방식으로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농림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농림부와 협의를 하셔서 원래는 과거에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숙퇴비로 시선이 돌아가는 바람에 실지로는 하겠다고 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보여 주시는 이 자료는 2주 전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농림식품부가 보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사실 질산이온으로 분해되어 오히려 후유증이 더 날 것이라는 부분이 같이 충분하게 검토가 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농림식품부하고는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사각지대의 미세먼지 저감의 대상으로 농촌 잔여물이라든가 농촌 축산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저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 발표된 내용 중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저감 효과가 충분치 않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저감 효과가 보다 큰 그러면서 후유증이 없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 암모니아 배출을……

○**한정애 위원** 농림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냄새가 사라진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질산이온의 형태로 또다시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저것은 사실은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듣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음, 오늘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잠깐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3년 묵은 주철관 내부입니다. 상수관입  
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먹는 물의  
실제 물 관이 저렇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연도별로 관로 세관을 얼마나 했는지를 수도사  
업자별로 한번 봤습니다. 관로에 대한 세척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조금 오래된 게  
많다 보니까 대구 수도사업자가 조금 더 나은 편  
이고요.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지  
금 시범사업 정도만 하고 있지, 계량기에서 수도  
꼭지까지 하고 있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  
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척을 하고  
있고 각각의 수도사업자에 따라서 별도의 플러싱  
방법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규칙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은 그냥 교체하는 방식,  
굉장히 낙후된 방식이지요. 적절하지 않다고 봐  
지고요.

강관이 좋으나 또는 플라스틱관이 좋으나 2개  
의 제조업자끼리 이권이 있는 것은 뭐 세력 다툼  
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  
냐의 문제는 수도사업자의 선택임에도 분명합니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에서 지적한 바는 부적합한 플라스틱배관, 부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아  
니하고 부적정 인증을 받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다녔고 그게 한 2000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부적정 플라스틱관이 이미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  
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이 애초에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쓰여지고 난 뒤에 이렇게 세관  
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  
다. 환경부가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  
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저 관로의 세척과 관련한 것도  
어떤 규정과 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세관 방  
식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압질소를 사용  
한다, 고압공기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기를 어떻게 하느  
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하  
나 더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조기 폐차를 환경부  
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 주세요.  
경기도가 저감 방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조기 폐차입니다. B/C가 6  
이 넘으니깐요.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올해 1분기에 조기 폐차한 시행 차주가 한 953  
명이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953명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  
다. 이중에 한 절반 정도인 460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요. 조기 폐차를 하고 뭘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고 다시 경유차  
를 신차를 구매합니다. 아니면 아예 중고차 경유  
차를 구매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저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한정애 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  
지 아니하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이라고 내  
려보냈더라는 것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다시는 이  
런 방식으로 조기 폐차 후에 또 다른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다음 것 하나 봐 주십시오.  
다만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에 대해서 상  
한액이 지금 165만 원 정도인데요. 그 뒤에 것  
봐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험개발원에서 중고차량 기준 가액이라고 나  
와 있는 게 저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160만  
원 정도인데 중고차 가격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별 유인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자기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는 비용 대 편익  
으로 보면 경유차를 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  
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 더 현실화해 달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지금 보조금을 차등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등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체 차종이 지금 없어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차종으로 가능한 것을 최대한 빨리 찾고 두 가지 접근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오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돈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임이자** 신보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현 위원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시지요.

○**신보라 위원**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히 문성현 위원장님께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시간은 다음 질의 때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가 계속 장기 파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 무용론, 경사노위 폐지론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엇그제 7월 4일 5차 본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 3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하고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 경사노위법에는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의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말하자면 식물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경사노위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벌써 한 두세 달 전입니다. 이후 대책이 좀 논의된 게 있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래서 7월 4일 그 회의를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세 분에 대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공론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일은 거기에 기초해서 적절한 조

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특히나 청년·비정규직 이렇게 관련한 관계자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기저에는 민노총의 개입이 여전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민노총의 직접 개입보다도 탄력근로기간의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은 민주노총과 세 분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실제 위원들을 개선하려는 법적인 조치의 개선 이런 내용 말고는 더 이상의 대안을 찾기가 어렵겠네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저는 문성현 위원장님이 어쨌든 사회적 대화의 큰 틀의 이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시고 난 이후로 경사노위가 진전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통탄함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제가 우스갯소리로 병이 3개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 말에 폐암 수술을 했고 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당뇨가 걸려 가지고 그것도 그랬고 또 방금 이야기한 세 분 그 문제 때문에 화가 하도 자주 나 가지고 화병이 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종합해서 대표를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난마처럼 얽힌 부분을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정리하고 제 임기도 8월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임기 전에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실은 담보 상태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기가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의제별위원회에서 낸 합의사항은 최종 의결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은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가 있고 합의가 있는데요, 저희 법에 따른 가장 최종적 의미를 가지려면 본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회를 거쳐야……

○**신보라 위원**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최종적인 노사정의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국회와 정부에게 책임 있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최종 본위원회에서 합의한 의결을,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에 있어서의 일정한 의미 있는 논의들은 또 의미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정부나 국회가 그 수준에 맞춰서 첨가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의제별위원회에서 낸 합의사항이 최종 결론이 난 노사정 간의 공식적인 합의라고는 볼 수 없대라는 것이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사회 각 계층 위원회 구성도 실은 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층 관련 위원회도 실은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신보라 위원**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출범 준비회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보니까 청년위원회 출범 준비에 참여한 단체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도출되고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준비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양성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신보라 위원**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계층별 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든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좁히고 가닥 짓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문성현 위원장님이

민주노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최근 민주노총의 폭력사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충남에서 또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사업주에 대한 감금폭행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원들로 하여금 자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폭력사태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은, 선배로서 침언과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총연맹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는, 업무는 교섭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이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민주노총이 교섭이 빠진 투쟁, 교섭이 빠진 투쟁은 과격해지기가 쉽다. 그러면 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빨리 자기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도 미력하나마…… 여러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노총이 꽤 씩한 점도 많고 아쉬움도 많겠지만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빠르게 건강 회복하십시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현 위원장님께서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지난번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께 질문하러고요.

요 근래 생겼던 수돗물 사건 그리고 또 지난겨울의 미세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론도 상당히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거기에 대처하는 정책부서가 오히려 거기에 휘말려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꼭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말에 한중 환경장관 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 ‘공동연구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자로 조명래 장관 발

언이 보도가 됐어요. ‘중국 외교부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언급이지 실제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하고서 ‘중국 환경부장관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분명히 시인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또 외교부장관이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국외발 미세먼지가 82%다’ 하는 것이 우리 조 장관의 발언으로 대서특필 보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라 그랬고 또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도 환경과학원에 대해서…… 이 근거 말이지요, 로데이터 방식으로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저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해도 ‘제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만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외 영향은 평균 75%다’ 이것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서 국외발이 82%라고 조명래 장관이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관의 발언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상대로 무슨 명예훼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론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 ‘북한에 대한 오보는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북한에 관한 보도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상돈 위원**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인대 의회에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초유의 의원외교가 거부당한 것이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가 공세를 취했어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매우 복잡

하다.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중국 매체가 총동원돼서 ‘한국의 미세먼지 중국 탓은 상식에 어긋난다’ 하는 것들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NASA와 공동연구를 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은 자신들의 주권 문제가 있는 탓도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환구시보가 전면적으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현재 한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한중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세먼지가 지난겨울에 상당히 또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는 또 온갖 얘기를 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 오히려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고서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우리나라의 언론보도나 이것이, ‘환경과학원 발표 저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사석에서 구전처럼 다 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 석 자를 알 만한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어저께 나왔던 환경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 환경부 보도자료예요. 여기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방법론, 배출량, 기상 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표현이 완곡한 것뿐이지 환경과학원의 결론을 뒤집어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하면 많은 학자들이 환경과학원의 모델 또 환경과학원에서 연구비를 갖다 계속 몰아 준 몇몇 학자들의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론이나,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의 결론은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신중한 게 필요하다’ 그랬고 ‘과연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예산



으로 보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으로 엇그저께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보다 확실한 과학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 고위 정책 담당자들은 발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리고 특히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갖다가 특정 성향의 학자한테 몰아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계속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고 또 이게 뭐냐 그러면 마치 국내 환경정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책임이 없고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으나,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계서 어저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학계의 누가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도 하고 또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논리적 부정합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글썄, 제가 하나하나 다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여러 에피소드에 관한 숫자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논거가 없거나 틀리거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70%, 82%라는 것은 제가 생태환경부장관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최고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농도 때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82% 발표한 것도 1월 1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고농도 기간 때의 최고치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평균치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균치는 대개 우리가 30~50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들의 연구를 통해서 다 밝히고 있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환경과학원에서 세 차례나 중국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저한테 소개해 줬고요. 3월 달 고농도 시즌 때도 중국학자들이 한국에 끼친 영향도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데이터들을, 중국 데이터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국내 연구자들이 한 데이터도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물론 어떨 때는 평균값을 쓰다가 어떨 때는 최고값을 쓰는 이런 것에 혼란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딱 잘라 가지고 몇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여러 맥락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국발도 NASA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대기학자들이 한 10% 정도 북한발 미세먼지 있다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개 합의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어느만큼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중 간에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번 11월 달 LTP 보고서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달에 2016년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물론 다 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올 4월, 5월까지 검증을 거쳐서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번 11월 달 장관 회의에서 공식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간에 합의를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은 일일이 다 언론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지금 실행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예보제라든가 조기경보제 공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바로 지난달 워크숍이 베이징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도시 간 여러 가지, 월경성 이동 오염에 대한 분석도 확대해서 '청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요. LTP 보고서는 내도록 돼 있고 실증사업도 확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장관급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실제 합의가 다 됐습니다. 이런 등등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환경과학원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좀 편향이 됐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그렇다 해 가지고 명색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자가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지는 않

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만 그 자체가 엉터리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 이전에 모델링 플러스 측정치나 위성자료를 더 첨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바로 NASA와 함께, 이른바 우리 몸의 진단으로 친다면 측정치를 통한 분석이라는 것은 진단기를 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NASA와 함께하는 것은 일종의 종합진단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년도 하반기에 2차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양 기관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델링 플러스 측정, 위성자료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내 측정망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모델링 플러스 측정, 위성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일반적인 일괄적 보급보다는 주변 지역, 특히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혹은 그런 장소라든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이미 원칙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를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의료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대란 위기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2018년 22만 6000t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용량은 18만 9000t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대략 3만 7000t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론상 이 3만 7000t이 처리가 안 되고 어딘가에 보관되거나 방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처리 능력을 벗어난 의료폐기물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대구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1283t의 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전현희 위원** 국민들의 불안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의료폐기물을 또 고령, 대구, 통영 등 열네 군데에 불법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가 높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5일 이내에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치된 폐기물이 수개월째 불법 방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또 이 업체가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에 모든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1283t이 병산의 일각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 지금 이렇게 폐기되지 않은, 소각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전현희 위원** 지금 이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방치될 경우에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의료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관리시스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을 총량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저귀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감염성이 조금 떨어지는 기저귀 등의 폐기물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최근에 여기에 환경부가 뒤늦게 시행령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대책을 잘 마련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고요. 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또 줄이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지금을 해야 되고요. 또 의료폐기물의 주

배출원인 종합병원급에는 멸균을 자가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발생원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폐기물이, 이게 폐기물업자나 소각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배나 이런 것을 타고 육지로 와서, 멀리 와서 폐기가 되든지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돌아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권역별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 폐기물 소각장이 선진국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장 구분 없이 이동하는 데 멸균시스템을 정확히 하면서 소각은 일반 소각장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허위보고하는 이런 것도 강력히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즉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의료폐기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제도적 대책 방안 말씀드린 것 참고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전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제가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시중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대란을 빚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의원급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높은 웃돈을 주고 이것을 배출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제가 제출한 법이 통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건강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에서 철저한 감독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경

우에는 처리 용량의 한 120%를 초과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비합리적이고 사실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용량을 초과해서 120%로 돌리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또다시 선정을……

○**전현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변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00% 기준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14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83t 적발도 했고요. 그래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이미 내부에서 수차례 숙의, 회의를 통해서 대책으로 다 채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의 전용 소각장 제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할 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멸균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것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참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심지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그 의료폐기물을 예외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근거 규정을 만들 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폐기물을 일단 올해 발생한 전량 해소하고 또 앞으로 장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참입니다.

○**전현희 위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수돗물 대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

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6월 18일이지요, 환경부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인천시 담당관들은 제대로 답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 3일 정부 원인조사단을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전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기까지 10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주무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뭐가 잘, 일이 진행이 되기 어려웠더라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 말의 뜻을 알고 싶고요.

제가 환경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장관님의 얘기와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놀랐는데요. 98년도 매설 이후에 22년간 관 세척을 하지 않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아마 국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관로 세척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수도물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관로 세척에 대한 기준들이 미국, 캐나다 1~2년에 한 번씩, 3~5년에 한 번씩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1~2년에 한 번, 미국은 1~3년에 한 번, 일본은 5~10년 이렇게 제가 환경부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관로 세척을 한 번도 안 한 데서 일이 벌어졌다? 이게 단순히 수계전환 당시에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관로가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야 안 벌어질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제까지 이 문제는 방치해 두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관로 세척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보시면,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인천 붉은 물 초기대응 과정들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태도 하나 있었지요, 청양 쪽에서 발생했던 것.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신고접수 현황과 환경부의 대응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천시는

5월 30일 날 발생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당직실로 팩스를 보냈고, 서울시는 최초의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서울시가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청양은 우라늄이 1월 달에 검출이 됐는데 3월 11일 날 환경공단에 보고가 되었고, 환경부의 대응도 정부원인조사단을 6월 7일 날 운영했고, 서울시는 7월 2일 날 모니터링했고, 그리고 충남 청양은 아예 별도의 조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접수 현황도 제각각,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것은 수도법상에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즉시 신고하고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매뉴얼이 왜 이때까지 점검이 안 되고 있었는지 그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라늄 기준치 2~3배가 검출된 충남 청양군인데요. 이것을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의 두 달 뒤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리 보고를 받아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 청양군은 ‘주민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부는 끝,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소규모 급수시설 1만 5000여 곳 중에서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 검출한 시설이 22곳이고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은 건수만 2만 5092건입니다. 전체 시설 중의 9% 시설에서 초과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44곳에서 520건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물,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아무런 위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천 적수 사고대응 과정에서도 162개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긴급하게 실시했는데 서구의 3개 학교에서 총트리할로메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총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인 클로로포름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수질검사 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관리시스템이 뚫려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이런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또 피해 대상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을 때는 의무적으로 매뉴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한 관련 법안 전체가 다 재정비돼야 되는데 재정비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국 상수도의 운영인력 축소와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2017년 환경부 상수도 운영현황 자료 보면 2008년에서 2017년, 9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실제로 급수 인구수는 367만 9000명이 증가했는데 반면에 상수도 사업 직원수는 20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5년에서 2017년의 상수도관망 관리인력 현황에 따르면 직원 총 인력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던 인천시 114명, 충청남도 79명 이런 형태로 죽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직원 분야에서도 기술직 인력 수가 감소한 지역은 부산광역시 56명 그리고 제주도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운영 전문인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수도 운영의 전문인력 문제를 다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기술직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매뉴얼 숙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생한 수계전환 과정에서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계전환시에 그 매뉴얼, 충분히 방류하고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 보고 싶고, 실제로 이러한 전문가들에 대한 매뉴얼 숙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법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시간 되는 대로 답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재라고 했던 것은 제가 16일 인천 공촌 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미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내부의 보고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했었는데 예컨대 ‘왜 수계전환이 빨리 됐느냐?’, ‘탁도계가 고장났는데 왜 탁도계 확인이 안 됐느냐?’ 또 그리고 ‘실제 수계전환의 루트는 어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자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했고 또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제가 좀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인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발언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고 난 뒤에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종의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장관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6월 3일 날 전문가가 투입됐고 6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여러 가지 원인진단과 그다음에 특히 정수장을 청소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세 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게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인천시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거하고 상당히 다른 수계전환의, 관리상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제기된 건데 이 부분을 드러내 놓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를테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3일 이내로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환경부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일단 지자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아니, 그다음 답변하셔야지요.
- 환경부장관 조명래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의 상수 관리는 특히 관망 청소나 세척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아까 수계전환도 매뉴얼에 의한다면 탁도를 측정해서 탁도가 높으면 이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버리도록 되어 있고 또 세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척이 정기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이지 여러 사업에서는 필요할 때 적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세척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망 관리를 정수지 중심에서 배수나 급수관 혹은 급수지 혹은 그 밑에 있는 블록 이런 단위의 관망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앞으로 관리에 초점을 뒤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른바 컴퓨터 관련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현장 베이스 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을 전국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가 어떤 책임을 졌느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일 날 이미 저희들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봤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세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인천시가 6월 10일 날인가 받게 되면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면서 지금 아는 수계전환 문제가 소상하게 밝혀졌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수돗물안전지원단이라든가 정상화지원단이라든가 해서 산하단체·기관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한 20~30명이 팀이 돼서 매일 한 200여 군데를 측정하고 수질을 매일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라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라늄 건도 그렇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월 달에 발견이 되고 2월 달에 그 신고가 결국은 상수도정보시스템에 보고된 건데 그것은 보고시스템이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1월 초에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환경공단에 입력이 되는 것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정보가 한 달 가까이 정도 뒤늦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쨌든 간에 환경부를 대신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2월 달에 나왔던 거고요. 2월 달에 측정된 것이 3월 달에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3월 달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요청했는데 청양군에서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5월 달인가 보고를 하게 되면서 그게 누장 보고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질기준 초과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원인이 생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지를 하고 난 뒤 3일 이내에 환경부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 초과가 되거나 할 때는 즉시 환경부로 보고를 하고 환경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관련법 개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 장관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정미 위원님 방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환노위 위원님 방으로 다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시종일관 오늘 들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법에는 분명히 좋은 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의 부작위

입니다, 부작위. 부작위에서 일어난 일을 지자체에다가 미루고 지자체의 탓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하시고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님들, 다시 7분 정도로 할까요?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난해 7월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이 처음으로 1000시간대, 1986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 52시간제 시행 1년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연간근로시간은 처음 1000시간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활인구 조사에 보면 노동시간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저희 사업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제, 3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에 52시간제는 대부분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인 이상 특례 사업장에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많은 부분에서 긍정 평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그리고 또 300인 이상의 특례 제외 업종에도 올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급하게 법 시행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문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민원들을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서는 계도기간을 주는 부분과 내년도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온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노선버스 업체같이 요금 인상 또 운전기사 채용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 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최소 기간으로 부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50인부터 299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일정 부분, 52시간을 아직 초과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해서 기업체마다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FGI도 해서 기업체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혹시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관심과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배달·퀵서비스·택시·대리운전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부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국내의 플랫폼 노동자가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전체 취업자 수의 2%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의 1%가 플랫폼 노동자인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상당하다고 입증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플랫폼 노동의 범위라든지 시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라든지 사회안전망 보호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왜 이 일자리를 취했느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당장 일거리라든지 수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저소득자형 노동자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노동법이나 산재보험법 등 현행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현재는 2%만 차지하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의 저소득자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복지라든지 사회안전망 보장이 특별히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특성만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

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보니까 지난 3일에 관계부장관 합동으로 해서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책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이 담긴 부분들이 발표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옥주 위원**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뿐만 아니고 플랫폼 시장이 스타트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가의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초 실태조사가 완료된 만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법과 그리고 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4대강 보 해체 관련되어 가지고 여당 소속인 나주시장도 죽산보 해체 반대 공문을 보내 왔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리고 역시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 시장님께서도 세종보 해체를 유보해 달라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주시의원들이 죽산보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한다라고 시의회에서 촉구하는 목소리를 통과시켰습니다.

4대강 보 해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또 이와 관련되어서 농민들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서 환경부장관과 그다음에 4대강 보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의 2월 22일 보 해체 결정은 그 절차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제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이다.

첫째, 과거 국가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업에는 항상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제가 사회 보면서 지적했던 바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새만금 사업 민간위원회는 찬반 양쪽에 동수를 구성하였고 박근혜정부 총리실 산하 4대강 민간조사·평가위원회는 찬반 견해 표명자들을 제외한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중 전부 다 종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목적성을 처음부터 드러냈었다.

둘째, 소위 B/C 평가를 위하여 1 이상은 해체, 1 이하는 상시 개방 두 가지 결론밖에 없고 보의 유지관리는 제외되었다. 즉 1 이하의 어느 수치에서는 보의 유지와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셋째, 수질에 대한 평가항목이 물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 법 제10조의2제3항 등 수질 측정 기준의 규정은 BOD, TOC, TP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녹조 및 COD 등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를 임의로 설정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이 스스로 위법한 법 집행을 자행한 것이다.

넷째, 수질 등 통계자료에 대하여 그간 환경부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 등 객관적이고 상당한 기간 축적된 보편적 자료를 배제하고 짧은 기간 자의적 기간 설정을 통하여 왜곡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섯째, 심지어는 보의 해체 등을 결정하려면 수질의 비교 시점을 보의 개방 전후로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점에 따른 비교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자 10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보 건설 전과 보 건설 후 최근의 수질을 비교하는 편법을 동원하였다.

여섯째, B/C 평가에서 보를 해체하면 수질과 수생태계가 각 보마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 이상의 편익이 생긴다는 것은 보를 개방했을 때 수질 및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상 보 개방 이후 녹조가 더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편익이 아니라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B/C 평가는 완전 조작된 것이다.

일곱째, B/C 평가의 편익은 환경가치추정 기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던바 적어도 강가에 사는 주민과 농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대도시, 대전, 서울 등의 시민들에게 질문이 집중되어서 그 평가가 왜곡되었다.

여덟 번째, 그간 감사원의 네 차례 감사결과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조사·평가 결과에서 4대강 보의 주요 효과로 인정받았던 이수과 치수 기능에 대하여 아무런 편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를 해체하면 편익이 생긴다는 왜곡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4대강 보에 담긴 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강물을 사용하는 주민, 농민이 강물의 주인이다. 공유하천용수권이 있다. 보로 인하여 늘어난 용수권과 지하용수권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로 보로 인하여 증대된 분류와 함양된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농법 등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환경부는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여 강물을 흘러 보냄으로써 강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까지는 없다.

7월에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중 민간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식견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한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도 단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넘어가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이신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이번에는 환경부장관께……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우리 자연공원법의 28조에 빨강게 표시한 글 읽어 드리면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탐방예약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탐방예약구간을 지정해서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이유, 첫 번째 자연생태계의 경관 등 보호를 위해서,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장관님이 다른 문제로 바쁘셔서 자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저하고 잠시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창현 위원 다음.

우리나라에 지금 ‘대피소’라고 이름 붙인 정말 정체가 애매모호한 영업시설 14개가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숙박객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주로 다 국립공원, 지리산, 설악산 등등의 정상에 있는 대피소들입니다. 원래 대피소는 겨울 등반 중에 오건, 여름 등반 중에 폭우를 만나서 안전을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대피소거든요. 외국의 국립공원 가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매출액이 19억 1900만 원입니다, 1년에. 이게 숙박료하고 매점에서 파는 물건값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한 데부터 먼저 탐방예약제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탐방예약제 실시 여부, 모든 대피소에 다 탐방예약제 안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하고 있어요. 별로 사람이 가지 않는, 거기는 자연생태계가 양호하니까 그거라도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예약제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탐방예약제의 취지는 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지리산 세석, 장터목 1만 4000명, 2만 5000명이 와 가지고서 2억 5000만원, 4억 4000만 원씩 매상 올리는, 사람이 많이 와서…… 이런 데부터 탐방예약제 안 하고 도대체 어디를 탐방예약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업에

지장 있습니까? 왜 이런 데는 빼놓은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장관님 돌아가셔서 한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꼭 물어봐 주세요, 그 알량한 이삼억 수입 때문에 여기는 탐방예약제를 다 피해 간 거냐, 여기만큼 훼손된 곳이 없는데 왜 여기는 탐방예약제를 안 하고 있는 거냐. 연하천도 그렇고 설악산 중청·소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해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문제를 제기한 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보존지구라고 있습니다. 생태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존해야 할 지역들이 자연보존지구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대피소들이, 이른바 숙박료 받고 매점에서 물건 파는 영업시설들이 다 자연보존지구에 있어요. 이것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대책 세우자 하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책이라고 가져온 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겁니다, ‘2021년에 중청대피소 철거하겠다’ 이것은 이미 그전에 백두대간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철거하기로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고요.

제가 도대체 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에서 영업을 하느냐, 사찰에 화장실 하나도 못 짓게 하고 노점상 다 몰아내면서 그 자리에 가서 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숙박료 받고 초코바 팔고 이려고 하느냐, 옛날에 라면을 왜 팔고 하느냐 그러니까 라면은 이제 안 팔더라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정도예요. 라면 문제 제기하니까 라면 안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대체 국립공원을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영업을 위해서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도대체 자연보존지구 안에, 엄연히 실정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2022년 이후에나 무인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뻔뻔스러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매점과 숙박료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든가 법을 안 바꾸려면 거기에서 영업행위하면 안 되지요.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피소를 대피소답게 운영하자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작 19억의 그 돈, 예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나 또 국립공원의 대피소 존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서 국립공원답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피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가 있는 데가 6개 국립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탐방 예약제를 도입해서 점차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을 줄이게 되면 대피소에 대한 수요도 줄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피소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단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계획 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방 예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아울러 대피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불법 시설……

○**신창현 위원** 자연보존지구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자연보존지구에 있다는 것은 불법 시설이거나 부적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여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태적 영향도 함께 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그다음에 산악단체 간에 이견이 계속 표출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산악단체에서는 여전히 대피소를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단체나 위원님 같은 분들은 국립공원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탐방예약제 도입과 확대를 우리가 하면서 이외에 대피소 설치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의 여러 가지 내용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국립공원답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거나 혹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한정애** 1분만 더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산악단체들은요 대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피소를 대피소답게 유지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업행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담요 대여하고 돈 받고 초코바 팔

고 돈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하면 대피소는 있어야지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국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다음 화면.

○**위원장대리 한정애**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신창현 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 질문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신창현 위원**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위원님 찾아뵙고 다른 고견 들으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안 오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은 산업혁명 이후에 흑사당하는 여성이나 아동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계약자유의 원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고 발전되어 온 노사관계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도 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했고 헌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 이것이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필수유지업무제도라든가 협정근로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ILO는 합법적인 파업 참가자를 대신해서 대체인력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는 방식으로 파업권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대신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자거나 노조에 대해서 규제하자거나 파업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확대 허용하자는 주장은 ILO 기본협약

87조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노동삼권 보장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설하실 때 언급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노동자유계약법,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정미 위원** 대체근로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래서 이 연설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유계약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은 노사 간에는 교섭력이나 정보력에서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헌법에서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LO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사관계법 제도 방안을 경사노위에서 죽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근로의 허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좀 많다 해서 그 논의에서도, 경영계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공익위원들이 그것은 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해서 반영하지 않았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ILO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U에서 대한민국이 ILO의 4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요즘 일본의 무역제재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EU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무역에 대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제재 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ILO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국회 내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어서 선 비준하고 국회에서 후 입법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전문가 패널 내에서 어떤 제재 조치로 가기 이전에라도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에서는 최근에,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소집 요청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EU 측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에서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전문가 패널 소집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ILO 협약 비준, 그러니까 선 비준·후 입법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ILO 협약 비준만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같이 국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ILO 협약 비준과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EU 측에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선 비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동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장우 위원** 오전 첫 번째 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경기동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생산, 투자 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하는 이재갑 장관의 인식 이게 아주 굉장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참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추경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경기침체가 개선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추경한다고, 돈은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책적인 수정이 없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동결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올리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우선……

○**이장우 위원** 아니, 그것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지만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의도대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장관하고 정부 의도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장관 개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도 없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 빼고 실질적으로 주무장관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정부 측 인사들이 주가 되는 여기에다 맡겨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위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든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든가 하고서 그 책임은 그 정권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공익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익위원을 정부 측 인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익위원들이 정부 측하고 협의해 가면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애 간사,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장우 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식당도 몇 군데 갔는데 정말 험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국회의원들 뭐하시는 거냐, 정부가 이렇게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하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냐’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쓰시는 것이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 드시면서도 대번 뭐라고 하시잖아요. 직접 들으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많이 듣고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러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소비가 촉진되면 다시 생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다시 또 소득이 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4대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예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니까 그러면 그 해고된

직원들이 다른 직장 있느냐? 뽑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 수도 20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자가 114만 명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2000년 이후에 최대치이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폭 늘었는데 이것이 고용통계를 떠받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 27만 원, 25만 원 하는 이런 일자리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늘린 것은 좋은데 이것이 30, 40대의 양질의 일자리가 준 것을 커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17시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해서 3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7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됩니까? 초단기 알바 일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입니까?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는 71만 명 감소했고, 이 이야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감소했고 36시간 미만은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분들은 증가하고, 지금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장관이든 차관이든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이런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책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루고 있다고 봐요.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책에 실패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요……

○**이장우 위원** 장관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현장 이야기를. 제가 아는 강소기업인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 왔는데 금년에 100명을 감축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에이에스하는 서비스 업체가 직원이 250명인데 만약 금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닫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냥 안일하게 장관이 앵무새가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도리어 장관이 대통령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야 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장관직 던져야 되고 그래야 국민들 삶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고? 그것도 아니면 무슨 장관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니까 정부 측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올려서는 안 된다, 내려야 된다’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도 듣기 싫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권역별 공청회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만……

○**이장우 위원** 장관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밑의 보고 듣지 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직접 다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기업인들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장관님이 듣는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듣는 말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정책을 개선하세요.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면 사표 던지세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구를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설훈입니다.

세계경제가 축소경제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상황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이 경제를 어떻게 난국을 탈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현상을 놓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또 뭐 때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노동 쪽에서는 강력히 있습니다. 그 점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 자회사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 상황에서 보고 있는 바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IMF 이후 양산되어 나왔는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 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사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정책으로 즉 바꾸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만 2500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에 따르는 갈등이 생겨서 도로공사 같은 데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자회사 설립 남용입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딱 그런 상황인데 물론 도로공사 상황을 보니까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노사간에 상의한 결과 자회사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전환 방식을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합의 내용인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한 연 2900만 원에서 현재 3770만 원으로 30% 올리는 것으로 합의하고 정년도 61세로 했는데 그중에 거부하는 분들이 1460명이 있습니다. 5000명이상이 동의했고 거부하는 1460명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직접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1·2심에서 직접고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자회사의 원칙으로 가자고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로공사 쪽에서 타협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직접고용의 원칙이

라고 생각합니다.

직접고용을 앓고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부분은 일종의 편법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자회사로 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자회사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접고용이 원칙인데 왜 그러나, 사기업 부문에서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고용을 해야 사기업 쪽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직접고용을 안 하고 자회사 형식으로 끌어 나간다면 사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자회사 설립 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양극화 문제를 타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가능하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꼭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자회사 설립이 제대로 됐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자회사 설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회사는 정규직 전환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회사가 만약에 기존의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회사는 그런 용역업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 조직으로서 설립·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회사 운용 모델안도 마련·배포해서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자회사 방식을 택한 기관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갖췄는지 이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정확하게 자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기관들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진행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리고 자회사가 노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회사로 가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자회사로 가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적어도 지금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까지 노동이사제를 하라고 하면 반발하겠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공동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 도로공사 같은 저런 갈등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작년 말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모델안 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노동이사제의 도입도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하면서 자회사가 노사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임이자** 다음번에 안 하시면 더 드릴게요.

○**설훈 위원** 다음번에 안 할게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3분 더 드리세요.

○**설훈 위원** 폴리텍 교원의 정년 문제가 있습니다. 폴리텍 교원들이 통폐합 과정에서 65세로 되어 있던 것이 60세로 낮춰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60세 이상이 되면 신형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고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65세에서 60세로 낮췄는데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정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년연장이고 일본은 70세까지 가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은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노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65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60세로 낮춘 것은 그때는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65세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쯤은 적어도 폴리텍대학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년연장에 대한 이틀테면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 그것을 차치하고 폴리텍대학의 정원이 65세에서 60세로 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이것을 조정했는데 십몇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년연장 문제는 폴리텍 교수 협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교원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신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 그다음에 교원·교사의 인력구조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점, 그다음에 타 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현재 65세가 아니고 60세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유능한 교수들이 안 온다는 것 잘 아시지요? 교수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대학은 65세 정년인데 폴리텍대학만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으니까 실력 있는 교수들이 안 오려고 하고 있는 현상,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잘 검토해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강효상 위원 저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죄송합니다, 강효상 위원님.

다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병인가요, 당협위원장이신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강효상 위원 제가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모진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장관님을 뵈고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작심을 하고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장관님을 뵈고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부장관이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노동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지금 뭐 읽고 계시니까, 장관님? 듣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런데 제 말씀하는 도중에 뭘 읽고, 그것은 무슨 쪽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상 위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강효상 위원 미리 연습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우리 장관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 하시다가 장관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이 엄중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접수를 본인 스스로 한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업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60점은 된다고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썽요, 한 50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효상 위원 50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 때 그래도 장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주무장관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장관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 2일에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 단체가 동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월 9일 날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어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뭔가 나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나라가 잘되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나 개인 생각 얘기 안 할래’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그……

○강효상 위원 시간 때문에, 이 질문 끝나고 마저 해 주시고요.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이런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한 장관님께서 몇 마디는 해 주셔야 우리 공익위원들이나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폭력시위로 구속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그 당시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무슨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여러 번 드렸고 언론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속 그 자체는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인영 대표연설과는 좀 결이 다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민노총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 이것이 단기적인 이익이든 장기적인 이익이든지 간에 지금 너무 단기적인 목표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선을 넘고 있는 민노총 아닙니까?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하신 주대환, 모 정당에 가지지요, 혁신위 위원장이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괴물을 죽이든지 우리가 가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자성과 반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되신 위원장은 지금 5월 21일, 올해 3월 27일, 4월 2일, 3일 등 네 차례에 걸쳐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동했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부수는 등 폭력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도 물론 사법부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민노총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계속 조장할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촛불청구서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노동부장관께서 불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과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노동부장관님께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우리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지,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불법 경영에 대해서 늘 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의 노동부장관께서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면 이것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 아침 사설 한번 보십시오. 언론 기자들을 협박·감금하고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영상은 지금 완전히 맹탕인데요, 전부 지워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행위가 일어났는지 지금 이 뉴스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휴대폰을 빼앗아서 영상을 지우게 하고 이런 무법천지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 문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다 지키지…… 따뜻한 마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당함이나 곧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현

실에서 조화롭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지금 도처에서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민노총 노조원들의 최근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어떠한 경우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지 불법행위나 파괴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상 위원** 최저임금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 10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최윤열 민주당 의원께서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오신환 바미당 대표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된다……

지금 법률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에 긴급조치 권한까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설문조사에서도 영세사업자의 44.4%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영세사업자들의 절규와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과도한 인상입니다. 저는 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인상은 경제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장관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시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 그리고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 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 제가 서면질의 딱 하나만 환경부 장관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이것은 나중에 보좌관 드리면 됩니다.

○강효상 위원 예.

환경부장관님, 제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환경부장관님께…… 답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건강성 회복,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환경부의 목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나온 것이 금강하고 영산강에 있는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어떤 보는 어떻게 하고 어떤 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로 정부가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닙니다.

아까 임 위원이 지적하셨던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분석기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할 때 여러 가지 단서를 단 게 많습니다. 예컨대 공도교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공주교의 문화적 이용, 특히 문화축제 할 때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환경부장관 조명래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한정애 위원 조사·평가단의 결과가 있다 하

더라도 그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해체라든지 그 결과가 그대로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4대강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는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 하나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갑 장관님,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는데 답변이 이상한 게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서 기관경고 돼서 과징금 45억 좀 넘게 받았고요 거기다가 과태료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 부과받았고요 거기다가 임직원 6명에 대해서 징계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8일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사로 올해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 운용 자격심사 기준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역이나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해서 투명성 지표, 얼마나 건강하게 투자를 하느냐 또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와 관련된 투명성 지표가 저렇게 5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같으면 이미 금감원에서의 감사는 거의 끝이 났고 제재와 관련된 내부적인 정보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4개 회사가 거기에 응찰을 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저런저런 운용사에 대한 심의사항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만큼,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운용사를 비록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선정을 하지만 금감원의 감사 결과 이런저런 조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해제될 수 있

다라고 하는 단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도 언론보도도 나고 그래서 해당 부서로부터 즉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해 가지고 작년엔 이미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TF도 구성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도 논의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종……

○**한정애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종 공시된 제재내역을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조달청을 통해서 제안요청 공고가 이미……

○**한정애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안요청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게 2018년 12월 20일이에요, 이게 확정된 것이.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것을 언제 것으로 정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최종 공시, 금감원에서 확인이 되는 그 시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문제가 있던 것이 공시되는 그 시점에서 그 해당되는 업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빼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3월 달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 해당되는 운용사는 금감원이 이미 감사를 다 끝냈고 과정을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절차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조달청에서 제안요청 공고를 한 것이 작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저희가 기속이 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면 3월 달에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협상대상자예요. 우선협상대상자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협상대상자인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인 거지요. 그리고 저게 발표가 났습니다, 금감원의 발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도……

○**한정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는 그냥 그걸로 입찰이 끝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금감원에서 저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사안이 우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자산운용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자산운용위원회 위원분들은 금감원에서 이번에 적발한 사항이 사실은 경징계였고 거기에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자산운용 주간사로서 하는 업무영역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정애 위원** 고용보험기금이나 또는 산재보험기금 운용, 고용보험기금만 운용해서 저 운용사가 가져가는 돈이 1년에 45억입니다. 한 번 운용을 맡게 되면 4년을 맡게 됩니다. 180억이지요. 금감원으로부터 과징을 받은 금액이 거의 45억이 넘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가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응찰에 응한, 운용을 하겠다고 하는 다른 업체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여기밖에 없으니’ 그런 답답함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업체가 4개나 되는데 거기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도 최종적으로 금감원이든 또는 금융위에서든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은 자산운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무슨 갑갑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염두에 두고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애 위원** 장관님, 투명성 관련한 지표를 넣지 않았다고 하면 장관님의 지금 그 발언, 그 맥락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 있어서 투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계속 진행하

고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만 그 뒤로 계속 다른 증권회사들도 계속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회사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NH투자증권 같은면 제재심의위원회에 7월 11일과 7월 18일에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투자증권만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상황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투명성 지표를 포함한 이상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해당되는 운용사를 정하거나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없었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임이자** 지금 마지막이실 것 같으면 10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환경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SRF 폐기물 고품연료 말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SRF 정책은 뭘니까? 퇴출입니까, 확대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초기에는 환경 관련 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출구로서 SRF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했잖아요. 처음에는 미세먼지 문제로 해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작년 4월에 쓰레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사용을 확대한다고 하니깐 좀 다행이기는 한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동철 위원** 진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환경부나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정권은 바뀌어도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공무원이 바뀐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 온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180도 바꾼다, 그것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영혼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헌법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부럽다고요. 장관들이 탁탁 그만두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이것 아니에요? 엄격한 환경기준은 강화하면서 그러나 사용은 확대하는 쪽으로, 그게 맞겠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SRF 발전시설 말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SRF 발전소 반대시위가…… 아주 전국입니다, 전국.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준은 강화하면서 이것 사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게 충남 내포 있잖아요, 충남 내포를 산업부가 권고를 해 가지고 SRF 발전으로 가다가 LNG 발전으로 전환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산업부 보도자료 나올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이라고 했어요. SRF는 청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SRF를 쓰지 않는 내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산업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저히 SRF의 환경기준을, 아주 강화한 그 환경기준을 준수하게 만들면…… SRF는 우리가 자원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부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환경부장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마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갈등 조정 차원에서 저 대안을 채택한 것으로……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서 버리면 다른 지역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SRF LNG로 바꿔 달라 그러면 다른 지역 다 바꿔 줄 것입니까? 바꿔 줄 거예요, 안 바꿔 줄 거예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지자체에서……

○**김동철 위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박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됩니까? 정책 하나가 되면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설득해서라도 일관된 정책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 가지고 말이지요, 이제 다른 지역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SRF 관련해서 발전생산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 한 2000억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만 200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민간투자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D 자금도 보니까 한 500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또 대폭 축소해 봤어요.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정확한 시그널을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장에 가서, 남한테 말하지 말고 장관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독일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동철 위원** 그런 사례들 설명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직접 국민들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나주는 곧 갈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흑산도 공항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가요,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3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의 제2공항을 2025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주도가 어떤 곳입니까? 유네스코 3관왕이에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받았어요. 그리고 저 어새, 물수리 등 범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제주도애다가 이렇게 800만㎡에 이르는 공항을 2개나 만들어 주고 있고.

또 울릉도 어떻습니까? 울릉도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이 일곱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울릉도도 2025년 개항합니다.

흑산도는 이유라면 딱 하나 있어요, 국립공원이라는 것 하나. 이것도 언제냐, 81년도에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서슬 퍼릴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지금 울릉도 국립공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하지요?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제주국립공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전두환 때 밀어붙였던…… 흑산도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게 지금 됩니까?

제가 흑산도 가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 이야기를 해서 곰솔…… 곰솔 다 말라 죽고 하나도 없어요. 흑산도가 국립공원이 된 것은 흑산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인근의 홍도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홍도라든가 다른 거기도 이런 데 때문에 된 것인데 진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나 거예요.

또 국립공원위원회도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써 다 됐어요? 10분 주신다면.

○**위원장대리 임이자** 예.

○**김동철 위원** 환경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민간위원, 정부위원 10명씩 같았어요. 그런데 전임 장관 때 민간위원 5명을 늘려 봤어요. 거기다가 민간위원들이…… 원래 자연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을 하려면 여러 부처라든가 국립공원위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 위원들이 자기들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냐, 기획재정부의 예타가 잘못됐대요. 국토교통부의 비행안전성이……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대요. 자기들이 전문가입니까? 국립공원 위원들은 공원 그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심의를?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와 같은 위촉

과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게 정의·공정 아니에요? 이게 공정합니까? 제주도 와 울릉도하고 비교했을 때 흑산도 공항을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고요.

꼭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모니터를 해 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막 하고 있던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경제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무능 정부예요. 기분 나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 투자, 수출, 생산, 소비 뭐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있어야지요. 홍콩기 부총리 대외여건이 어찌고저찌고…… 중국이 1/4분기에 6.4% 성장했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저렇게 큰데 3.2% 성장했어요.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 봐야 무슨 야당 위원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야당 위원의 주장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경제학자 100명 중에서 63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의 낙제라고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전직 경제학회 회장들로 구성된 경제학회 원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라, 시장 중심 정책으로 가라, 야당 이야기는 안 들어도 이런 전문가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증대 또는 규제 완화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만이 소득주도성장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ITC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도 이것 동의하세요? 우리 경제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말씀이 너무 안이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죽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항복할지 모르겠어요. 경제를 어떻게……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정부 있습니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장관님, 아까 한중 문제는 국감 때 참고인 진술 등등 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미 앞서 나온 질문에서 제가 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다 똑같이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의 한 70%가 이것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다 했다 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유효합니다.

○**이상돈 위원** 또 하나 요새 현안 문제고 해서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야 흔히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자원순환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자원순환사회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추구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상돈 위원** 그런데 쓰레기도 쓰레기 나뉘니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 제도로 사료화하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모아서 개, 돼지, 닭한테 사료로

먹이는 것 사실상 억지로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원순환입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부분적으로는 자원순환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게 자원순환이 됩니까? 장관님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여서 키운 돼지고기 먹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현실적으로 지금 사료로 쓰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아마 저가품 돼지고기야 그런 것을 쓴다고…… 아마 장관님은 그런 돼지고기 먹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네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장기적으로……

○**이상돈 위원**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아니고.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환노위 소관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이 나온 바가 있어요.

(임이자 간사,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 보니까 환경공단하고 기상산업기술원이 뒤에 거의 최저 아래에 있어요. 환경공단은 역대 최저입니다. 2017년에도 최저, 최저, 최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빼면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만 말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어쨌든 환경공단은 좀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재구조화가 아니라 이것 고질병이 터진 것입니다. 인천 수도권 같은 데도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뒤늦게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참 내가 이력서 한번 훑어보니까 뻥할 뻥자 같아. 나는 산하기관장도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관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임명해야지, 그냥 이력서 보면 도대체 이런 거대한 기구를 움직여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한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상산업기술원은 청장님이 원래 기관장 하신 데 아닌가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과거에 공항장비 같은 것 해서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당할 사람은 멀쩡히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뭐. 그것 시정조치한 적 없잖아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기관에서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퇴직한 사람들에게 다시 다 환원시켰습니다.

○**이상돈 위원** 공항 기상장비는 기상청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업무수첩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기상청은 만드나요, 업무일지 같은 것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

○**기상청장 김종석** 예, 만듭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 갈 때 앞에 기상청장님 사진 들어갑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사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조그맣게 얼굴만. 그런데 어떤 산하기관장이 자기가 기관장 됐다고 전신사진을 한 페이지를 깔았어요. 나는 그런 모습은 영국 여왕에나 해당하는 것 같아. 어떤 기관인지 아세요? 기상청 산하기관이야. 기관장이 업무일지 처음에다가 자기 전신을 찍은 사진을 한 페이지, 앞에다 깔았어. 그것은 대통령도 안 하고 영국 여왕이나 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인지 알아요? 모르세요?

○**기상청장 김종석** ……

○**이상돈 위원** 잘 안 보셨구면, 관심이 없으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못 봤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것 꼴찌한 기관인데 어디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게 작년엔 C였다가 금년에는 D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나 하니까 그렇게 꼬시다는 거야. 나도 이력서 봤는데 앞길이 뻥한 것 같아. 그래서 기관장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참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환노위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A급 받았습시다. 통쾌하게 참 잘했어요. 과거에는 여기도 낙하산이라고 그러는 사람 외부에서 왔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 말이지요 국회만 열리면 저 구석에서 하루 종일 자. 그런 사람 임명하니까 꼴찌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임명된 기관장은 내부에서 그 기관을 잘 알고 전문성도 있고 애착이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니까 A를 받더라는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나 기상청 산하기관 문제 많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 소관 일인데요 지금 장관 계시기 전에 전임 장관 때 풍력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상돈 위원** 보고받으셨지요?

그중에서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데가 거의 자연을 갖다가, 산등성이 다 파괴하기 위해서…… 전임 장관께서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해서 억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은 과거에 군수가 자기 군에다가 필요도 없는 댐 세우겠다고 그래서 주민 갈등이 10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풍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 주민들이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가 아니라 전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내가 뉴스를 보다가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영양군이 에너지 효율화·친환경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 표창을 받았더라고. 이것 환경부장관 알고 계시요? 잘 모르실 것 같아.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미리 보고받았으면 이렇게, 적어도 실국장이 알았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것 해서 풍력발전이 환경대상을 탓어요. 이게 보면 말이지요 그야말로 생업을 뒤로 하고서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과거에는 필요 없는 댐 때문에 10년간 주민들이 온 고생을 했고 지금은 이놈의 풍력 때문에 장사를 다 망쳐서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역장이 무너질 것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친환경대상 선정은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결과만 보고받았습니다.

○**이상돈 위원**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환경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가 한 거예요? 환경부 자체가 한 거예요, 신문사가 한 거예요? 이것 환경부 자체가 한 거예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신문사가 주최하고 아마 환경부장관상을……

○**이상돈 위원** 그렇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환경부가 이것 선정하겠어요. 신문사가 했는데 거기서 환경부장관 타이틀 달아서 이것 수상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환경부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나는 실국장들, 간부들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또 일반 민간 영역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충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더라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올해 3월까지 이 정책으로 추가로 청년 18만 1659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로 신규 채용 능력이 확보돼서 작년에 일자리도 2017년 대비해서 19.3%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확충안은, 효과가 높은 이 정책에 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다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기업이 너무 쇠도해서 올해 목표인 9만 8000명을 조기 달성해서 지난 5월 11일에 이 좋은 정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몰리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추진이 중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추경예산 2883억 원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처리만 되면 추가로 약 3만 2000명의 청년 고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 좀 안 계시는데 청년 일자리, 실제로 청년을 추가로 수만 명 가량 고용할 수 있는 아

주 실효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드시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5월에 일선 기업 대표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일선 기업에서도 대표들이 이 장려금 지급이, 현재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서 인재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정당성을 홍보하시고 또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11일자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계획을 보류하고 추경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추가공용장려금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우려하고 있는 사중손실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장려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청년 일자리 정책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세먼지 추경예산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또 올 가을이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 또 이 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 위원님을 잘 설득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예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자세한 말씀은 잘 알고 계실 테

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환경부장관님께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국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대책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대책을 질의드렸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또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원인 기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쟁기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간적인 단계로 장관님의 입장을 좀 여쭙고 또 제도적 보완 대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해자들이 구제급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또 기업에게 구제급여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종의 실질적인 배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계정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나눈 것은 당시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옥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만 사법적으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 기업은 인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기업의 기금 각출 이런 문제 때문에 구제계정과 구제급여가,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나머지 기업들도 형사 절차를 밟고 있고 기업들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와 계정을 구분할, 차별할 이유는 현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피해 기업을 불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입법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별 손해배상은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인과관계 규명이라든지 또 가슴기살균제에 노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장관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슴기살균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위원님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저희들이 제도와 방안 속에 다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구제급여하고 계정 합치는 것도 큰 방향은 그렇게 정해 놓고 그걸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법으로서 제정돼서 뒷받침돼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기보다는 입법부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전 위원님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의원들께서도 유사한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합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지 구제급여를 계정을 지금 합치기에는 현행 법상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자를 완전히 통합하기 전까지는 구제급여를 잠정적으로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상당성 자체를 완화해서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구제급여를 넓히되 계정을 좁혀 가고 언젠가는 양자를 합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제도화의 방안들, 특히 법제화 방안 같은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늘 여러 가지 상의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김동철 위원** 그냥 계속해요. 한 30분만 하고, 한 번씩만 더 하고 끝내요. 정회하면 오래 걸려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시라고 하셔서……

○**전현희 위원** 30분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냥 한 번씩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임이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우리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1953년도에 6·25전쟁이 막 발발하고 나서 생겼는데 그때 당시 우리 근로기준법이 생기고 나서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65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도 여섯 번 넘게 변하고 요새는 10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강산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성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성을 규율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어떤 것들로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사용종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휘명령,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의 요건으로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제조업 근로자라든가 전통적인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일종의 자영업자 그 경계선에 서 계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사용종속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보게 되면 경제적 종속관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특수고용……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특고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특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이자 위원** 새로 막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새로운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직업군들이 막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 종속관계는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입법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너털너털한데 그러면 썬박하게 어떤 근로자와 사용자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다양한 직업군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이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왜냐하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취약계층임에는 틀림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새로 정비하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취지입니다. 그게 나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이자 위원** 그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임이자 위원**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노동자유계약법이라는 것이 자유를 넣었을 때는 사용종속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우는 것이고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 새로 계속 생겨야 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새로운 특고분들과 같은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 정부에서도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형태의 규율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가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근로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ILO 협약 비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사노위에서도 합의를 이뤄 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우선 먼저 ILO 관련돼 가지고 독일이 되었던 프랑스가 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또 이면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노사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체근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핵심협약을 할 때 비준 안 했으니까 빼더라도 독일, 영국, 프랑스, 가까운 일본 이런 데는 대체근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업 시에 직장 점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부당노동행위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마 나라마다 다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대체근로를 지금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그런 금지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산별교섭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을 안 갖고 있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이런 데는…… 프랑스 같은 데도 단기근로자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은 존재하지만 다른 부분은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직장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노사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리나라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일반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내부인력에 의한 대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니까?

이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오늘 현안보고의 내용을 봤는데 첫 페이지에 고용노동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과 관련한 여러 동향에서 물론 개선된 지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성과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신호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님은 고용지표의 솔직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고용동향에서는 상용직 비중이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좋은 지표만을 다루셨는데 아실 겁니다. 청년실업률은 계속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청년실업률이 2019년도만 해도 3월에 10.8%, 2019년 4월은 11.5%, 5월은 9.9%, 청년실업률이 10% 이상 늘어난 전례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화된 동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용보조지표 3’인데 체감실업률도 2019년 4월에도 25.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나쁜 지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나쁜 지표에 대해서도 솔직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어야 청년들의 질 높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이행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나쁜 지표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부의 세심한 대책도 나올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지표만을 더 부각해서 일자리의 질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라고만 호도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률이나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실업률이 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확장실업률의 경우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청년고용 상황이 지표상으로는 좀 호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1%p 차이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5월 19일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전부가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업률이 개선은 커녕 나빠지고 호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는데 이런 것은 가짜뉴스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위원님, 청년의 경우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제 기억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이고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증가할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것을 보고 고용상황이 나빠졌다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 실업률도 약간 낮아지는 현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실업률의 경우에, 말하자면 구직활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또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구직단념자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상의 변화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 구직단념자 비율도 20만 5000명이고 전체 구직단념자 중에 4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안정한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일자리 동향에서 종사자 지위별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상용직이 많이 늘어난다고 고용노동부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상용직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그러면 청년일자리의 질이 딱 명확히 좋아졌느냐를 단정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상용직이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약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상대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일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직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절대적인 청년일자리의 질이 늘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반면에 이번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증가한 취업자에 일용직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항상 전년 동기 대비를 하니까요—2019년 1월 17.3%, 2월에는 21.3% 그 다음에 3월, 4월 보면 1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부분에는 고용지표상에 질적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한정에 간사,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는 초단시간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그러니까 초단시간이라고 하면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범위인데 이 초단시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33.4%, 4월에는 46.7%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건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좀 단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저희는 우선 청년고용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다만 최근

에 청년고용 상황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대는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취업자도 많이 늘고 고용률도 많이 늘었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그런데 취업자 고용률의 지표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10대와 20대 전반부에서 많이 나타난 양상이고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연령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는 분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15세부터 19세, 20세부터 24세 이것을 나눈 세부지표가 있으면 저한테 그것을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이자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장관님,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3월 28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당 기업이 선정되었고요. 금감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의결이 5월 22일 날 있었고요. 6월 26일 날 노동부는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계약자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최종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님의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계약자 선정하고

난 바로 이틀 뒤인 6월 28일 날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라는 이미 계약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이 2022년부터 실시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거기다가 기금형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기금은 거의 대부분 외부위탁을 하게 되고 외부위탁 운용과정에서 사실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어떻게든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저희가 작년에도 고용보험기금 운용주간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할 때 내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가지고 잡음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절차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일 자로 실시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부가 건설사고가 나면 앞으로는 국토부에 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의 대상은…… 이게 법은 2015년에 개정됐고요, 2018년 말에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보고의 대상 자체가 확대되었을 뿐이지 법 자체는 2015년에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대상되는 내용은 건설사고라고 해서 국토부에 모두 다 보고해야 되는 것은 사망사고, 3일 이상의 휴업이 나오는 부상사고,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중에 산재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원래……

○**한정애 위원** 사망사고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산재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재 보고를 받는 것은 사망사고 또는 3일 이상 휴업 시에 받는데 국토부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한정애 위원** 국토부가 추가로 받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국토부는 사고가 나면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데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은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누군가는 여기 붙어 가지고 이것을 입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내용이 노동부에 결국 보고해야 되는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왜 이게 조정이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도 이것을 국회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우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치가 왔을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과거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3인 이상 사망이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으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제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저쪽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고가 나자마자 2시간 이내에 전산망에 입력하는 형태의 보고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게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통계가 조금 늦게 잡히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이나 또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중복적인……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으나 이렇게 이 부처에서 요구하고 저 부처에서 또 똑같은 것, 비슷한 것 요구하고, 사실 알고 보면 부처 간에 정보만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저희가 이것은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조사표가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쓰고 있는 데 반해서 국토부는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이것은 제가 환경부장관께…… 일단 노동부장관께 먼저…… 두 개 부처가 다 관련이 돼서 그런데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중에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산하의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 수자원기술과 관련한 것을 지금 노동부는 심층 논의 사무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해당되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정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급부처인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한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TF에서 민간위탁 논란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했는데 이때 심층 논의 필요사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느냐 하면 댐 점검·정비 업무는 발전사 경상정비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사 경상정비의 통합 노사전협의체에 준하는 형태의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애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임이자** 마지막이지요?

○**한정애 위원** 예.

환경부장관님, 노동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댐 점검·정비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것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에만 그냥 맡길 게 아니라 환경부가 조금 챙겨야 될 사항은 챙겨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기술주식회



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거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했던 것을 분리해서 수자원기술이라고 하는 업무를 별도로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명칭만 다르게 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중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산강과 황룡강이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광산구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무법천지다, 노조 횡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거의 수십 차례 보도가 났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임이자 간사,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요구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급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합원 우선채용을 하는 단체협약을 맺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 명령 의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몇 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아예 현장 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형사상 형벌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

니다.

그런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보면 채용 압력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절차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타워크레인 급행료 받고, 월레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철 위원** 아니요, 채용절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이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 부분은 결국 노동법 사안은 아니고 일반 형법 사안으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근로감독관이 있잖아요.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데 대해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언론에 수십 차례가 보도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몇 차례 보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런 유사 사례가 전국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저렇게 두고 보자는 등 앞으로 더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바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합시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인 정부 책임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지 않고…… 하여튼 결국은

문제인 정부가 책임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해 두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흥남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신규 지원 목표 9만 8000명이 다 소진돼서 이번 추경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도 시행 2년 만에 200배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행 2년 만에 200배가 증가할 정도로 된다면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였는데 과거 정부들은 왜 안 했어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부정수급 사례가 한도가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등록하지 않나, 사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지 않나, 기존 근로자를 신규 근로자로 꾸며서 신청하지 않나, 업종을 바꾸지 않나, 정규직으로 등록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해고하지 않나, 이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청년고용장려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제도 시행 2년 만에 200배를 늘리니까 그런……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테일에 문제가 없어야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인 정부 일자리 정부인데 일자리 못 만든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만들면서 막 그냥 줄속으로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그런데 2년 만에 200배로 증가했다는 부분은 시행 첫해라고 하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진행했고요, 본사업이 시작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로소 본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무튼 이것 철저히 사후 점검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중견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입사지원 경쟁률이 100 대 1, 200 대 1인 회사인데 어차피 다 채용할 사람들, 고용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중견기업에 대해서까지 확장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중손실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가 국민혈세라고 하면, 550억 정도다 그러면 대단히 큰돈 아닙니까? 국민세금이라면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동안 수차례 규정을 완화하면서 잘못 지급된 액수가 55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일자리안정자금 닳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수많은 댓글들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고발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신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오늘 뭐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수돗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수돗물 문제, 특히 상수도 관로 문제가 제기됐던 게 90년대 중반인가, 환경부차관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또 그 후에 김대중 정부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새로 깔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벌써 20년 됐어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한 것도 20여 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요새 인천 사태 같은 게 단체장들이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두지 않고 행사, 선심성 복지 이런 데에만 주력한 것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데 책임이 크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법의 지도 단속, 법 집행 권한을 위임해서 지자체로 다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 현재 환경부, 지방청, 지청에 있는 공무

원들이 현장 대응능력, 사명감, 성취감 같은 게 굉장히 뒤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단 지자체에 일차 책임이 있으니까 온 나라에 그냥 방치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이걸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지청 또는 지방청의 현장 집행 이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고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앞으로 환경부가 수돗물 책임지고 다 하겠다 이런 답변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수도법 보게 되면 2조(책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62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등등 하고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일차적인 건 지자체에 있더라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도사업의 책임은 어느 나라나, 우리도 과거부터 지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대응 같은 것도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 5월 30일 날 이게 연합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보고해서 본청에서 다루기 시작한 게 한 6월 며칠날 했어요? 4일, 5일 그쯤 되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3일 날.

○**이상돈 위원** 3일인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상돈 위원** 그래서 7일 날 정부조사반을 꾸려서 활동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조사반 하게 되면 이런 일만 있으면 일일이 다 정부조사반을 편성할 것이냐? 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현장에 있는 환경부 지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자체랑 같이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부조사반의 중간발표가 18일이었고 ‘100% 인재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수돗물 사고는 천재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100% 인재입

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천재지변, 지진 나고 이런 일 있어도…… 그러면 수도 중단시켜야지. 오염된 수돗물 공급은 100% 인재이고, 그러니까 100% 인재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인재라 함은 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이것 보기에 따라서는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이런 대응 같은 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순발력 같은 것이 좀 처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지자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탁도가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탁도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수돗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해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생수를 먹는 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수돗물을 다 섭취하게 됩니다.

혹시 장관께서 이른바 선진국의 대형 수돗물 오염사고 같은 것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뚜렷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보니까 반면교사로 배워야 될 사항이 1993년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인구가 150만, 160만 도시에서 아주 대형사고가 발생했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또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100명 이상 사망한 사건이에요, 미국 150만 되는 도시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문제가 파악이 되니까 일단 밀워키하고 위스콘신주에서 보건 관련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합동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돗물에 있어서는 안 될—원생동물이지요—크립토스포리듬이 나왔다는 것을 파악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어라라는 워닝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은 사건 초기부터, 당일부터 EPA, 그러니까 연방미국환경보호청의 엔지니어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파악하고서. 그리고서 시 공무원들과 같이 첫날부터 원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연방국가이고 위스콘신주나 밀워키시 같은 데의 대응능력은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 안 됩니다, 수준이.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위스

콘신주나 밀워키시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EPA에서 담당 전문가가 나와서 초기에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른바 장관이 앞서 가지고 조사단을 만들고 호들갑을 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틀, 사흘 만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환경지청의 담당 전문 공무원이 가서 시 공무원, 주 공무원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했겠지만 이미 수돗물 사고가 나서 주로 면역이 약한 에이즈 환자 등 1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것 아주 큰 교훈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관련 법 세이프 드링킹 워터 액트(safe drinking water act)도 우리나라 법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EPA는 이런 법, 규칙을 만들고 오버시(oversee)한다, 지도 감독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듣거나 일반 사회에서 듣거든. 뭐냐 하면 항상 장관이 나서서 뭘 해결하라고 여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완전히 후진국 사고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 공무원이 현장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제일 취약한 게 현장 대응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면 법 집행을 이제는 지청한테, 지도 단속 같은 걸 회복시키든가 그런 방향 전환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일 날 우리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우리가 시한테 도움을 제시했지만 시가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원인조사단은 실질적으로 7일 날 구성이 되고 활동은 13일 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 조사단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학원, 수공, 한강청 직원, 그다음에 본부 직원 등 해서 그야말로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했고 불과 이삼일 만에 전반적인 원인 진단은 했고 처방에 대한 것을 제시

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지자체가 책임에 관한 여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는 과정에서 본격적 조사가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한 방안들도 뒤늦게 제출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마치고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무너졌지요. 철강산업 무너졌지요. 건설업 지금 엉망이지요. 석유화학·정유화학 이익률도 아주 최악이라고 그러합니다.

여기다가 강건히 하나 남아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하나 남아 있는 반도체 업체에 위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 주요 경기지표를 다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물론 투자 부진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착시효과랄까 그동안 이삼 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경제성장률도 좀 올라가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곧 끝날 거라고 보는데 이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몇 %였습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2.7% 아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반도체 착시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썽요, 반도체가 우

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제거하게 되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1.4%밖에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임이자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다만 반도체의 경우에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번에 하반기 경제 운영방향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수출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합니까? 당장 눈앞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이번에 하반기 경제 운영방향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괜히 본 위원 시간 뺏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반도체도 당장에 시급한 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정부가 지금 그 불을 못 끄고 있으니 기업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위중한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는 국내적으로도 단결하고 같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완전히 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노총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 2배로 갚아 주겠다, 지금 국내가 이런 형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정부가 자초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했고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왜 노동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에게 더 처우개선이라든가 잘되는 걸 좋아하지 내가 나빠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왔을 때 지속 가능한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경제를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장관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혁신성장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혁신성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신기술 개발이나 또는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이 별거입니까?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 서로 믹싱돼 가지고 신기술을 만들어 내고 신재료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차지하는 게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봤을 때는 민주노총의 행태가 아주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 했던 부분들은 이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경원 대표도 원내대표 연설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그 안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 그다음에 계약직 노동자 다 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파이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부문에 적자인 회사가 너무 많아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은 움켜쥐고 있어서 내놓지 아니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달라고 하면서 파이를 더 늘려 달라 하고, 그 파이가 어디서 나오니까?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 세금으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시점이 온 것이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가가 하지 못할 약속을 해 놔서 말이야, 그쪽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하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

을 안 지키니까 저렇게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이자 위원** 그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 가서 뭐 하십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이제 바로 가자, 수정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줄게, 세액을 감면해 줄게 해 본들 노동현장이 이렇고 노동비용이 이렇게 크게 되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외국 투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들 하셨는데 지금 건설현장 가 보면 이것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야, 그렇지 않습니까? 노·노끼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업무방해를 떠나서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키려고 한다면 노동부도 장관님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장하고 불법 파괴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합법적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장해야지, 그걸 뭐……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노총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법은 엄격히 집행하시되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이자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신보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층이 일자리 시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아까 초단시간 청년층 근로자와 그다음에 일용직 취업자의 증가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원래 청년층 취업자 통계가 대략 15~29세를 하는데 장관님께서서는 25~29세 지표에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아마 지금 초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은 15~24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게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고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해석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예요. 우선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분을 보면 2019년도 4월 말에 전년 동월 대비로 46.7%가 증가하는데 이것이 비단 15~24세에만 국한됐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부지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표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대로 15~24세에 국한되어서 거의 46.7%나 증가했다고 본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꼭 거기에만 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보라 위원**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할게요. 그 비중이 크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그러면 15~24세의 분포가 대체적으로 누구냐, 중고등학생일 것이고 그리고 고졸 취업생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고졸 취업생, 중고등학생의 초단기간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 신호예요. 대체적으로 고졸 취업생들이 주로 상용직 근로자랄지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취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업현장에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빠른 이행을 돕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었다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단시간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것에서 비정상인 어떤 작동 경로가 생겼다는 것이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그 부분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청년들이 그 연령대에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취업을 하는데 이 연령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군 입대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처에서는 6월 27일 설명자료에서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고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용형태가 다변화, 청년층의 취업행태, 학업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 경제활동 참여의사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렇다면 청년층이 원해서 초단기 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저는 이 해석이 너무 단편적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리나라의 통계조사가 위원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만큼 청년층만 딱 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조사한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근에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많은 비중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셨다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고용노동부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되는 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왜냐하면 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었겠습니까? 상용직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이행경로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질 높은 일자리들이 많으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다 선택을 하지요. 비자발적 선택인 상황에 놓여진 자발적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 나쁜 일자리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일과 가정, 일과 학습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분명 1, 2년 새에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상적으로 선택해 온 그런 경로와는 다른 산업현장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상용직 근로자, 청년들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낙 요새 산업현장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졸 취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항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대책을 보다 크게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그런 이행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도움, 정부적 차원의 지원 이런 것이 결국 실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영역이잖아요, 장관님.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전체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OECD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일견 계속된 일관된 입장으로 실은 직업훈련, 그러니까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여섯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일자리 이행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는 것이 저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맞습니다. 저희도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보라 위원** 좀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질의를 3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나타나 있는 금액이라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정 예산 요구안에 직업훈련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실은 고용노동부가 혹은 정부부처가, 정부가 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는 맥을 짚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은 그것에 대한 보완의 성격만 강하고요.

그렇다고 보자면 실제 진짜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이 22조 9000억인데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나뉘었을 때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이 고용장려금이고 직접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조 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그간의 원칙과 입장에 좀 반하는 방향이고 재정이 투입되는 비중을 보더라도 직접일자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의 성과를 보니 직접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조기능을 갖는 면이 있지만 이런 민간 일자리로 취업한 사람이 16.8%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쏟아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복지체계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부양을 통해서 고용지표가 일견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그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가졌던 원칙에 비하면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너무 높여놓고 실은 상대적으로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계속 감액을 했어요. 직접일자리 예산은 늘리더라도 본예산에 직업훈련 예산은 계속 늘렸어야지요. 고용서비스도 늘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액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거기에서 직접일자리의 비중은 굉장히 높여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훈련 예산과 고용서비스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반회계……

○**신보라 위원** 결국 고용노동부 안에서 조정을 보셨어야 했을 텐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직업훈련 예산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인데 고용보험기금의 예산 구조상 예산편성 때는 직업훈련 사업을 줄여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추경을 편성하면서 다시 확대되어서 실행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보다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장관님 오랫동안 고용노동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직업훈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추세가 있지요, 추세.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도 직업훈련 예산의 경우에 현장에서 직업훈련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방향과는 어쨌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신 이상돈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노동부장관께 ILO 협약 비준 문제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사실 장관께서 답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재 조약체결 절차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법제처 심사하고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재가하고 국회 비준동의하는데, 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외통위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환노위는 완전히 패싱처럼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패싱은 아니고 과거에 보면 ILO 협약 비준이 오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의견 조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의견 조치는 의견 조치고 의견 조처한다고 뭐……

좌우간 이것이 외통위가 주관이 되어 있어서 환노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현행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장관께서 언론에 인터뷰할 때 마치 선 비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선 비준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법적으로요?

○**이상돈 위원** 이론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만약에 국회에서 법을 사후에 보완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한다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상돈 위원** 어느 나라나 이것은 가능한 해요. 다만 뒤에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서 법을 못 하면 우리가 조약의무 위반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외통위하고 과반수 해도 환노위가 정부 원하는 대로 후속 입법을 할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론적

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데…… 현재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번 보시면, 이것도 문제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기간 중의 공약, 이것이 참……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인수위가 있었으면 공약을 조금 거르는 것인데 인수위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최저임금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랬다 이러한 평가도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참 꼬일 대로 꼬였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임기 초반에 전교조 범외노조 철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장관님 보시기에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전교조의 범외노조 문제는 저희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법률이 개정되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대통령은 철회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은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서 전부 범외노조 통제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철회하게 되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관님 말씀 같으면 대통령 공약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발언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ILO도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종의 폭탄 돌리기잖아요, 이것이. ILO를 가입하는 것이 마치 전교조의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ILO를 가입해야 된다는 논리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ILO를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ILO에도 가입 못 한다, 이것을 보면 서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그냥 공 돌리기처럼 확확 돌려서 계속 세월만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 면은 아니고요,

아마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있는 실업자 가입조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 개정이 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보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순탄하게 처리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어차피 답변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묻는 것은 국회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이 문제가 계속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또 한 가지 방법은 대법원에 이 사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보충질의를 마치고 4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까라는 ILO 핵심협약을 우리가 비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ILO 국제협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이상은.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노사가…… 한때는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친기업 정책을 폈던 정부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너무 친노동자 정책으로 흐르다 보니까 ‘뒤집어진 운동장’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에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균형을.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임이자 위원**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보완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EU에 의해서 제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닭이 하루에 계란을 한 개씩 낳는다고 해 가지고 달걀 하나 먹는 것이 감질난다고 해서 닭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방안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또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거기서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ILO에서 핵심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인간존중의 정신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존중 정신에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까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EU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예뻐 가지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국가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경쟁력을 대등하게 가져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장이 되고 성장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침체되고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노사 균형을 맞춰 가지고 같이 보완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ILO에 가입돼 있으면서 안 한다는 것도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로 맞춰 줘서 노사가 대등하고 균형 있게 해서 같이 박수쳐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가비전이 뭐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임이자 위원 갑자기 물으면 생각 안 나오, 그렇지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이제 막 생각이 나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5대 국정목표가 뭐니까?

(웃음소리)

아니, 국무위원들은 그것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세 번째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생각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지느냐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목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니 진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는 줄 알고 도덕적 해이가 여기 저기 말도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 목선이 내려와도, 안보 뺨 뚫려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경계에 실패했다고 막 야단치는데도 가서 음주회식하고, 이것은 장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인천도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 해이야. 환경부장관님도 인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하면 물도 안 지키고 해 가지고 붉은 수돗물 만들어 내고……

이제 또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뭘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장관님, 에어컨 구매하는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승인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모르겠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학원비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나고 또 어떤 것은 한약을 사 먹어도 승인이 아니고 이게 뭐니까? 정말로, 우리가 청년구직활동비를 처음에 주고자 했을 때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게임기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게임기는 안 되지요.

○임이자 위원 게임기 산다고 했는데 됐다고 낫다가 다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구직 면접을 위한 충치치료, 구직면접을 위한 충치치료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 돈으로 충치치료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위원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주잖아요.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상담하시는 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가 8만 명 아닙니까? 8만 명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이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1500억입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3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 \times 8 = 24$ , 2400억 아닌가?

이렇게 큰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 되어서 딱하니 기성세대에서 세금을 내서 너희들에게 지원을 주마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큰돈을 쓸 때는 기준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학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자기 구직활동을 많이 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요.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1회분에 대한 점검결과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더 정치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론 제가 나중에 국감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시행한 지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제도를 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문신 제거하는데도 승인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학원비 끊었는데도 안나고, 이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 누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앞으로 수정하시고 잘 챙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환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액이…… 이것 부정수급됐으니까 환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환수한 금액을 질의하십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면 좋아요. 환수한 금액과 환수할 금액 합쳐서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환수금은 553억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수할 금액 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지금 환수 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0.1%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노동부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도 냈었고 답변도 그렇게 해 왔었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0.1%면 0.09%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 553억 원은 부정수급 금액은 아닙니다. 부정수급 금액은 아니고 원래 이 사업 설계할 때 월평균 보수하고 비동거 친족 여부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게끔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확인해서 보니 사후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이자 위원 어차피 계속 주셔야 돼요. 딴 사람 먼저 하실 분들 하세요.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이 2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보라 위원 2분만 주세요.

○임이자 위원 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질문을 마무리하시지요. 1분 일단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저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그 질문이라도 마무리를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관련돼 갖고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과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산재만 딱 치면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국토부는 너무 편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쪽의 고용노동부는 아까 보니까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아닐로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까? 고용정보 관련돼 가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던데 내년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닙니다. 월평균 보수는 연도 중에 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그게 바로바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법이나 산재징수법 자체가 임금이 인상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평균 보수가 그다음 해에 신고된 금액 갖고 사후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비동거 친족의 여부는 대법원에 있는 가족관계부하고의 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과의 협의과정이 작년에 굉장히 길어져서 첫 번째 자료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 달에 1회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이것을 검증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노동자에 대해서 지속 지원하는 것은 부정수급 아니에요?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는 그만됐다는 얘기인데 그만둔 부분을 사용자가 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계속 줬는데 이게 부정수급이 아니고 뭐예요? 뭐가 부정수급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균 보수하고 동거하지 않은 친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론 그것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내년 2020년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면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규모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점검도 했었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사항도 분석을 했고……

○**임이자 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지 더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제도를 정치하게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위원님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5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5분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아까 질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고용노동부가 5월에 발행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주무부처로서 또 주무장관으로서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일자리 이행효과도 16.8%로 취업지원의 연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반면 직업훈련사업의 경우는 취업률이 45.8%

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결과 16.8%보다 훨씬 더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직업훈련사업의 취업 소요기간이 93.9일이니까 3개월 정도 되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의 소요기간인 4개월보다는 훨씬 단축이 되는 것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훈련 예산은 계속 감액되었고 2015년,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 2019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감축되었지요. 반면에 고용장려금 예산은 초슈퍼 증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직접일자리 예산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예산을 수립하는 기간들이 다가올 텐데 이것의 원칙에 맞게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내시면서도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국무위원으로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원칙에 맞게 본예산을 수립하자, 꼭 그런 입장을 천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나름대로의 고용상황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도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직업훈련 예산은 정상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일몰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효과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폐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증액된 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직업훈련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현안보고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2019년 정부입법 추진계획인데요.

앞부분에 정부 입법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법안의 국회계류 현황에 총 908건의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법률을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들만 적시하신 겁니까?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만 보시지요.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노조임원 자격 확대라는 법안밖에 없습니까? 노동조합 관련한 법안에 대체근로 관련한 법안들도 있고 노조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법률들은 적시하지 않으신 겁니까?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전혀 아닌가 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마 이것은 페이지 맨 위의 제목이 2019년 정부입법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내용을 여기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밑에는 의원입법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간에는 의원입법까지 합한 전체 숫자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그것을 장관님께서 해명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원발의 법안까지 이렇게 쓱쓱 빼 가지고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기에 불편하게 자료를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세심하게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으로 4차 보충질의를 마치고 마지막 5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순서는 임이자 위원님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마지막이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질의하실 분은 더 안 계시고……

○**임이자 위원** 왜 한정애 간사님께서 저의 의정활동을 막으십니까?

○**위원장대리 한정애**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방치폐기물 그리고 불법폐기물, 불법 수출해 가지고 돌아오는 폐기물, 정말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방치폐기물 뿐만 아니고 유해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314억 원에다가 국회 증액을 한 180억, 총액 한 5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500억 정도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지금 현재 방치쓰레기는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120만t인데 지금까지 한 40% 이상은 치웠습니다.

○**임이자 위원** 120만t 돼 있고 40만t은 치웠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니, 40%.

○**임이자 위원** 40%?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35%인가 그 정도 치웠습니다.

○**임이자 위원** 불법폐기물은 얼마나……

○**환경부장관 조명래**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 합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의료폐기물도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마는, 분명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지자체 책임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 대한민국에 방치쓰레기든 불법폐기물이든 쌓여는 있고 또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제2차 감염이 걱정스럽고, 하여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저와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의성에 방치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는 바로 옆에 낙단보,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침출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와 같이 듣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차라리 120만t 쓰레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을 그냥 다 짜서……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세금은? 그리고 그 대신에 구상권은 확실하게 청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청구해야 됩니다. 구상권은 끝까지 해서 받아 내야 되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정도는 가처분 신청해 봤다 그랬나요? 그랬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사업자의 50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차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 방치쓰레기를……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면 더 썩어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경부도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서 깨끗하고 맑고 쾌적하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에 진짜 예산 써야 된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은 확실하게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고. 그렇게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렇게 해서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지금 120만t 전체에 대한 예산이……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방치폐기물 한 26만t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운반비를 한 180억 정도 추가해서……

○**임이자 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로 계산했기에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돈이 더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부장관 조명래**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314억 원에다가 국회 증액 180억 정도 해서 500……

아, 처분부담금은 따로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리고 전번에 장관님께서 방치쓰레기 대표적인 의성을 갔다 오셨어요. 저도 같이 장관님 모시고 경북도지사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과 했던 약속이라든가 연내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번 추경에 500억……다 합쳤을 때 100억 이상이 의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의성을 꼭, 그것은 장관님께서 오서 가지고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기에 대한 쓰레기, 방치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권역별로 공공처리하도록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용역 결과 나왔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법제화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공공처리시설……

○**임이자 위원** 특별법으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한정에 의원님이 발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공처리시설 이렇게 명칭을 가칭 붙여서 국고 한 80을 넣고 주민지원기금을 현금화해서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일종의 신개념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접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성군 방치쓰레기는 반드시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장관님 약속 지켜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추경이 통과돼서 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하여튼 그 약속 지키면 지금 내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988명 충원에 합의해서 총파업을 철회하는 일이……

○**임이자 위원** 988명?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988명이고요. 위탁배달원을 750명 그리고 직종 전환 238명을 통해서 인력 충원은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살펴 주시기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늘 물 얘기도 많았고요, 먹는 물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막 앞으로 달려와서 상수관을 까는 데만 급급했지 그 상수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폐기물과 관련한 것, 이게 SRF 관련한 사업을 일정 부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사실은 쓰레기 대란이 생길 가능성은 이미 너무나 높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 특히나 소각과 관련한 시설, SRF 관련한 시설 이런 것들을 아주 소규모의 민간업체가 계속 유지하다 보니 그 불안정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것이 증폭되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넘비현상도 굉장히 극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국가가 중재를 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면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신창현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용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설훈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효 상	김 동 철	김 학 용	설 훈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장 우	이 정 미	임 이 자
전 현 희	한 정 애		

○**청가 위원(2인)**

김 태 년 문 진 국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윤 광 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차	관 관	조 명	박 천	래 규
기 획 조 정 실 장		박 광	송 형	석 근
자연환경정책실장		유 제	김 영	철 훈
생활환경정책실장		박 하	이 호	준 중
물통합정책국장		이 영	김 동	기 구
수자원정책국장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금	한	승
기후변화정책관	황	석	태
환경보건정책관	하	미	나
정책기획관	주	대	영
감사관	김	영	석
대변인	김	동	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단장	홍	정	기
조사·평가지원관	박	미	자
한강유역환경청장	최	중	원
금강유역환경청장	김	승	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	상	훈
대구지방환경청장	정	경	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	경	업
기상청			
청장	김	중	석
차장	최	홍	진
기획조정관	신	도	식
예보국장	전	준	모
관측기반국장	나	득	균
기후과학국장	김	남	욱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	금	란
지진화산국장	장	동	연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차관	임	서	정
기획조정실장	안	경	덕
고용정책실장	나	영	돈
노동정책실장	박	화	진
직업능력정책국장	장	신	철
통합고용정책국장	송	홍	석
노동시장정책관	김	영	중
고용서비스정책관	이	정	한
고용지원정책관	김	효	순
청년고용정책관	박	중	필
노사협력정책관	김	민	석
근로기준정책관	김	경	선
근로감독정책단장	권	기	섭
공공노사정책관	이	현	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정책기획관	선	우	정
국제협력관	김	대	환
대변인	김	덕	호
감사관	박	준	효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 성 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송옥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2019. 3. 27.
유은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019. 4. 2.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고용노동	김태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019. 4. 2.
환경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019. 7. 5.
예산결산 기금심사	신보라	강효상	자유한국당	2019. 7. 5.

**○의안 회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김동철·채이배·이동섭·한정애·김삼화·김중로·변재일·이춘석·문진국·이찬열 의원 발의)

3월 22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임이자·장석춘·정갑윤·김학용·박인숙·최교일·이양수·김순례·김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3월 26일 회부됨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김동철·이동섭·한정애·김삼화·김중로·변재일·문진국·김영호·이찬열·박주선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9. 3. 26. 이장우·전희경·엄용수·김상훈·조훈현·곽대훈·윤재욱·김성찬·경대수·성일중·김진태·박대출·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임이자·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김학용·박인숙·김성찬·원유철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철민·김민기·노웅래·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맹성규·한정애·

송기현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3. 28. 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노웅래·박홍근·신창현·김철민·조승래·윤후덕·송기현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철민·김민기·노웅래·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맹성규·한정애·송기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3. 28. 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박재호·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9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29. 정부 제출)

4월 1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김철민·임종성·신동근·서삼석·서형수·신창현·윤관석·전혜숙·윤후덕·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 김철민·임종성·신동근·서삼석·서형수·신창현·윤관석·전혜숙·윤후덕·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4. 추경호·정진석·박덕흠·성일종·김상훈·김용태·정태욱·박맹우·주광덕·김정훈·김광립·박완수·윤재욱·이채익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4. 4. 김태흠·윤상직·주호영·이명수·김도읍·경대수·김중희·송희경·원유철·

박맹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5일 회부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이용득·김병욱·안호영·임종성·김경협·정세균·윤일규·정춘숙·강훈식·이찬열·박홍근·신창현·조승래·윤후덕·서형수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5. 유승희·권미혁·김경협·김병관·김정호·박재호·백재현·윤후덕·이상민·이석현·이종걸·이찬열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4. 5. 정부 제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9. 4. 5. 한정애·백혜련·신창현·이규희·표창원·윤호중·최재성·유승희·이원욱·이철희·윤영일·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8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박대출·김기선·김성원·박완수·박덕흠·이현재·홍문종·정종섭·곽대훈·문진국·함진규·윤한홍·윤상직·정유섭·김상훈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박대출·김기선·김성원·박완수·박덕흠·이현재·홍문종·정종섭·곽대훈·문진국·윤한홍·윤상직·정유섭·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서형수·전재수·신동근·최인호·이상헌·서삼석·김철민·이학영·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0. 이규희·윤일규·윤호중·이후삼·김상희·김경협·안호영·김병관·설훈·이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회부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추경호·이은권·정종섭·최연혜·김석기·신보라·윤상직·김기선·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성원·성일종·정태욱·김태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이규희·윤일규·윤호중·이후삼·김상희·김경협·안호영·김병관·이인영·윤후덕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김종민·송갑석·김병기·송옥주·정인화·황희·전해철·표창원·박광은·윤후덕·백혜련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추경호·이은권·정종섭·최연혜·김석기·신보라·윤상직·김기선·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성원·성일종·정태욱·김태흠·김용태·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2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설훈·신창현·김민기·전혜숙·송영길·한정애·이인영·이용득·송갑석·서형수·전재수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신보라·이은권·이현재·박덕흠·추경호·정갑윤·이종구·윤종필·홍문표·경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5일 회부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송옥주·신창현·심재권·박홍근·이용득·이정미·김해영·서형수·김철민·김영호·기동민·박정·민홍철·변재일·노웅래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이상돈·이정미·유승희·박선숙·윤준호·장병완·문진국·한정애·황주홍·유승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5. 김철민·위성곤·전재수·신창현·박정·임종성·윤후덕·김민기·신동근·이석현·안호영·이찬열·윤관석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윤호중·이원욱·윤일규·강훈식·윤관석·변재일·이재정·김현권·김태년·윤영일·이학영·박재호·맹성규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16일 회부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6. 신창현·노웅래·위성곤·윤준호·김태년·서삼석·윤일규·박정·어기구·심기준·전현희·김병기·표창원·금태섭·윤관석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4. 16. 심기준·김현권·박정·송기현·신창현·김정우·박재호·설훈·이원욱·심재권·노웅래·서삼석·서영교·윤준호·전현희·금태섭·위성곤·김태년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6. 안호영·김현권·박정·소병훈·김철민·강훈식·윤관석·노웅래·김영진·이후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7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훈·송옥주·이용득·여영국·서형수 의원 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강효상·임이자·신보라·한정애·송옥주·김종석·정양석·하태경·김성찬·곽대훈 의원 발의)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강효상·임이자·신보라·한정애·

송옥주 · 김종석 · 정양석 · 하태경 · 김성찬 ·  
곽대훈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 김관영 · 김삼화 · 주승용 · 이동섭 ·  
박주선 · 남인순 · 원혜영 · 전해숙 · 신용현 ·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8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8. 서형수 · 송옥주 · 이학영 · 이용득 ·  
심기준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민홍철 ·  
신동근 · 김현권 · 김철민 · 김정호 · 전재수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서형수 · 송옥주 · 이학영 · 이용득 ·  
심기준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민홍철 ·  
신동근 · 김현권 · 김철민 · 김정호 · 전재수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서형수 · 송옥주 · 이학영 · 이용득 ·  
심기준 · 윤후덕 · 윤관석 · 김경협 · 민홍철 ·  
신동근 · 김현권 · 김철민 · 김정호 · 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9일 회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김태년 · 송갑석 · 이상현 · 김병기 ·  
박정 · 신경민 · 민홍철 · 기동민 · 금태섭 ·  
신동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19. 김태년 · 송갑석 · 이상현 · 김병기 ·  
백혜련 · 박정 · 민홍철 · 기동민 · 금태섭 ·  
신동근 · 서영교 의원 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전현희 · 기동민 · 김정우 · 김성수 ·  
신창현 · 도종환 · 송옥주 · 심재권 · 박경미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2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주호영 · 박완수 · 김현아 · 박인숙 ·  
추경호 · 이종배 · 박명재 · 정병국 · 김무성 ·  
이채익 의원 발의)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박광온 · 김혜영 · 윤준호 · 윤관석 ·  
권칠승 · 김두관 · 김종민 · 송갑석 · 송기현 ·  
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3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4. 정운천 · 이종구 · 최연혜 · 백승주 ·  
최도자 · 이은재 · 김무성 · 박주선 · 김성찬 ·  
정병국 의원 발의)

4월 25일 회부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 2019. 4. 25.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5. 박명재 · 이종배 · 신보라 · 김명연 ·  
김세연 · 이명수 · 안상수 · 박성중 · 윤재옥 ·  
주호영 · 박덕흠 · 백승주 · 김정재 · 황영철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5. 이용득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김경협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5. 이용득 · 심기준 · 김경협 · 소병훈 ·  
강훈식 · 윤일규 · 김정호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안호영 · 김병욱 · 최재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4. 25. 이용득 · 심기준 · 강훈식 · 윤일규 ·

김경협 · 서형수 · 윤후덕 · 기동민 · 임종성 · 소병훈 · 안호영 · 김병욱 · 정춘숙 · 송옥주 · 박홍근 · 조승래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9건 4월 29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송옥주 · 여영국 · 이용득 · 이후삼 · 김종훈 · 서형수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영호 · 김현권 · 전재수 · 남인순 · 김병기 · 송갑석 · 박홍근 · 김영진 · 고용진 · 기동민 · 맹성규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동철 · 김상훈 · 박지원 · 정태욱 · 김영춘 · 이석현 · 조정식 · 이동섭 · 신용현 · 심재권 · 이찬열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신창현 · 표창원 · 위성곤 · 전재수 · 김철민 · 박찬대 · 김상희 · 김영호 · 김병기 · 노웅래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30. 이명수 · 송영길 · 김명연 · 박덕흠 · 박명재 · 이은권 · 김재원 · 김성찬 · 성일종 · 박인숙 · 김선동 · 오제세 의원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19. 4. 30. 정부 제출)

이상 8건 5월 1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이철규 · 박덕흠 · 성일종 · 정운천 · 이은재 · 김규환 · 김진태 · 신보라 · 염동열 · 권성동 · 김선동 의원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맹성규 · 김성수 · 신창현 · 박정 · 홍의락 · 서영교 · 권미혁 · 박홍근 · 박찬대 · 전해철 · 김영호 · 남인순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5. 1. 황주홍 · 김성찬 · 이찬열 · 최도자 · 전해숙 · 황영철 · 정인화 · 이종걸 · 유성엽 · 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신창현 · 표창원 · 박찬대 · 박정 · 김태년 · 김해영 · 서삼석 · 권미혁 · 맹성규 · 김경협 · 송갑석 · 이종걸 · 노웅래 의원 발의)

5월 3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성일종 · 김성찬 · 정태욱 · 최연혜 · 윤상직 · 윤종필 · 이종명 · 광대훈 · 이채익 · 정인화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5. 3. 문진국 · 윤한홍 · 장석춘 · 신보라 · 임이자 · 유기준 · 김현아 · 강효상 · 김학용 · 강석호 · 박맹우 · 김규환 · 정갑윤 · 송석준 · 광대훈 · 김세연 · 이완영 · 민경욱 · 주광덕 · 김진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7일 회부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김정우 · 심기준 · 이용득 · 김병기 · 이상헌 · 최인호 · 임종성 · 윤관석 · 김철민 ·

원혜영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9. 5. 7. 김정우·심기준·이용득·김병기·이상헌·최인호·임종성·윤관석·이상돈·김철민·원혜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유의동·장정숙·김성원·이동섭·원유철·유승민·하태경·주승용·지상욱·정태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8일 회부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9. 주호영·박인숙·추경호·이종배·박명재·김무성·강석호·이진복·김도읍·이채익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부겸·유은혜·유동수·문희상·김동철·이철희·권칠승·정재호·강병원·표창원·노웅래·인재근 의원 발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부겸·유은혜·유동수·문희상·김동철·이철희·권칠승·정재호·강병원·표창원·노웅래·인재근 의원 발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김동철·권은희·박지원·채이배·김경진·이동섭·박선숙·박주선·장병완·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

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9.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10건 5월 10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0.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0.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온·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전현희·김성수·기동민·김상희·강창일·안호영·송갑석·김해영·이용득·이학영·이후삼·이종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9. 5. 10. 권미혁·박정·김병기·김상희·이학영·전혜숙·박순자·정춘숙·박완주·제윤경·이철희·백혜련·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맹성규·기동민·김영호·김정우·박찬대·서삼석·윤소하·이후삼·임종성·전해철·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3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이학영·김영주·최인호·박찬대·김병욱·최운열·송옥주·박광운·우원식·김현권·전해철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10. 전현희·김성수·기동민·김상희·강창일·안호영·송갑석·김해영·이용득·이학영·이후삼·이종걸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송옥주·강훈식·김학용·남인순·박정·신창현·유승희·이상현·임종성·정세균·황주홍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13. 한정애·김종민·백혜련·신창현·송갑석·최재성·유승희·서영교·이철희·고용진·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4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송옥주·강훈식·금대섭·김종민·신창현·유동수·유승희·이상현·정세균·조승래·황주홍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설훈·노웅래·김종민·김현권·서삼석·홍문표·위성곤·신창현·강창일·맹성규·윤준호·심재권·신경민 의원 발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조원진·박대출·박완수·홍문종·서청원·김석기·함진규·윤상직·최교일·윤상현·김정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신보라·조훈현·이양수·문진국·윤종필·유민봉·안상수·홍철호·김현아·정유섭 의원 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이석현·안규백·유승희·김영춘·이종걸·김부겸·박재호·김종민·민병두·조승래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신창현·서삼석·이용득·윤일규·전재수·남인순·박정·송옥주·김정호·변재일·임종성·노웅래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14. 남인순·김영호·신창현·김종민·민홍철·맹성규·정춘숙·이학영·김종대·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15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송옥주·이상현·유승희·원혜영·강창일·김종민·이규희·신창현·이정미·이용득·정세균·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5. 15. 최도자·이동섭·장정숙·김종희·주승용·이찬열·임재훈·황주홍·김관영·김동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김부겸·기동민·고용진·박홍근·신경민·권칠승·김종민·송갑석·전재수·김병기·신창현·김철민·조정식·김상희·박선숙·심기준·박정·우상호·정춘숙·채이배·소병훈·인재근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김수민·정병국·김정재·이동섭·김중로·이찬열·오신환·주승용·정우택·최연혜·송희경·김종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7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강길부·엄용수·김용태·황영철·김선동·안상수·김수민·김영우·박완수·유민봉 의원 발의)

5월 20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5. 17. 전현희·금태섭·기동민·김병관·김병기·김진표·신경민·신창현·심재권·우원식·이종걸·표창원 의원 발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0. 송옥주·강훈식·박정·변재일·송갑석·신창현·유승희·윤후덕·이상현·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1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박완주·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제윤경·박선숙·백혜련·김영호·맹성규·기동민·강창일·금태섭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박완주·정춘숙·박홍근·송갑석·김해영·제윤경·박선숙·백혜련·김영호·맹성규·기동민·강창일·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회부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주승용·이찬열·장정숙·김수민·이동섭·김동철·최도자·임재훈·정인화·이채익·성일종·이상현 의원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곽대훈·추경호·이종배·정태욱·김성찬·김정재·윤한홍·박맹우·윤상직·민경욱·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회부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여영국·심상정·위성곤·이용득·민홍철·김종훈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한정애·신창현·백혜련·김동철·윤호중·최재성·유승희·김정호·김상희·서형수 의원 발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24. 한정애·신창현·김종민·백혜련·

김동철·윤호중·최재성·유승희·김정호·김상희·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7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김태흠·김도읍·성일종·송희경·곽대훈·이언주·박맹우·이명수·윤종필·안상수·이종배·유민봉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28. 김상훈·윤영석·추경호·이종배·정태욱·조원진·김승희·함진규·김도읍·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9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성일종·추경호·윤상직·이종배·곽대훈·이채익·정인화·이명수·정갑윤·장석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29. 한정애·김태년·송옥주·강훈식·유승희·김성수·강병원·강길부·신창현·이철희·김상희·김영진·김경협·김정호·이용득·이규희·서형수·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0일 회부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송옥주·금태섭·박정·백혜련·변재일·송갑석·유승희·윤후덕·이상현·최재성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송옥주·유승희·송갑석·최재성·이상현·박정·윤후덕·변재일·강훈식·황주홍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박주민·김종민·맹성규·윤후덕·기동민·김부겸·강병원·윤관석·박홍근·위성곤·김태년·이훈·김철민·권미혁·설훈·서영교·노웅래·최재성·우원식·김상희 의원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송옥주·강훈식·박정·변재일·



송갑석 · 신창현 · 유승희 · 윤후덕 · 이상현 · 황주홍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천정배 · 안규백 · 이찬열 · 윤후덕 · 김병기 · 신경민 · 박정 · 송옥주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0. 신보라 · 추경호 · 안상수 · 김광림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31일 회부됨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9. 5. 31. 정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손금주 · 정동영 · 맹성규 · 정인화 · 김종훈 · 송영길 · 천정배 · 김삼화 · 조배숙 · 장정숙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신보라 · 추경호 · 안상수 · 김광림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한정애 · 고용진 · 백혜련 · 기동민 · 김성수 · 박홍근 · 김종민 · 심기준 · 유승희 · 김정호 · 이규희 · 윤관석 · 서형수 · 김상희 · 금태섭 · 이철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김성원 · 광대훈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박완수 · 박인숙 · 임이자 · 황영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5. 31. 김성원 · 광대훈 · 김명연 · 김선동 · 김순례 · 김정재 · 박완수 · 박인숙 · 임이자 · 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3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윤상현 · 김순례 · 이은권 · 조원진 · 김재경 · 정유섭 · 김성원 · 성일종 · 이완영 · 서청원 의원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주승용 · 임재훈 · 김동철 · 김관영 · 이동섭 · 유승희 · 윤영일 · 황주홍 · 박광온 · 최도자 · 장정숙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신보라 · 안상수 · 김광림 · 김순례 · 이은권 · 정양석 · 강석진 · 강효상 · 김규환 · 김태흠 · 박대출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4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오영훈 · 정세균 · 이찬열 · 신창현 · 송갑석 · 이개호 · 인재근 · 박홍근 · 강훈식 · 김현권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원유철 · 이연주 · 박덕흠 · 임이자 · 강석호 · 추경호 · 신상진 · 황주홍 · 김정재 · 홍문중 의원 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김삼화 · 김동철 · 이동섭 · 김수민 · 유의동 · 하태경 · 정운천 · 김관영 · 지상욱 · 이혜훈 · 이찬열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9. 6. 4. 김영춘 · 금태섭 · 유동수 · 이규희 · 박홍근 · 정인화 · 윤소하 · 신창현 · 송영길 · 이철희 · 맹성규 · 채이배 · 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5일 회부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서삼석 · 박홍근 · 박완주 · 신창현 · 안호영 · 강훈식 · 김영춘 · 기동민 · 김병욱 ·

김철민·맹성규·심재권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6. 5. 서삼석·박홍근·박완주·신창현·안호영·강훈식·김영춘·기동민·김병욱·김철민·맹성규·심재권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중로·이종걸·홍영표·최운열·전재수·유승희·이혜훈·정동영·이진복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5. 원유철·이연주·박덕흠·임이자·강석호·문진국·김정훈·신상진·황주홍·홍문종·정병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7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임이자·송희경·문진국·유민봉·윤종필·장석춘·원유철·김규환·강효상·김용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7. 김종민·윤준호·송갑석·김성수·전해철·소병훈·김병기·박주민·최재성·박정 의원 발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추경호·정태욱·강효상·김광림·정진석·최교일·윤재욱·김정재·정종섭·곽상도·박명재·장석춘·김상훈·곽대훈·송언석·주호영·김규환·임이자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9. 6. 7. 윤후덕·이찬열·금태섭·박정·김병기·심기준·전혜숙·정춘숙·김철민·이수혁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0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10. 김동철·채이배·정동영·김삼화·주승용·이찬열·유승희·최도자·한정애·원혜영·황주홍 의원 발의)

6월 11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김승희·김세연·이현재·이명수·박덕흠·이완영·김명연·윤영석·이종명·이양수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6. 11. 김동철·김삼화·주승용·이찬열·유승희·한정애·황주홍·임재훈·김중로·권은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2. 신보라·김현아·김정재·박순자·이현재·송언석·장석춘·김석기·유기준·홍문표·문진국·송희경 의원 발의)

6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3. 이명수·김태흠·유의동·강석진·김명연·김승희·김성원·박명재·이은권·김성찬·성일종 의원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3. 송옥주·금태섭·김영호·김종민·박정·신창현·심기준·유동수·이상현·한정애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6. 13. 정점식·송언석·정유섭·金成泰·김재경·송석준·최교일·김성찬·추경호·이은권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4. 김관영·박선숙·최도자·주승용·김삼화·임재훈·박주선·원혜영·이춘석·김동철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김관영·박선숙·최도자·주승용·김삼화·임재훈·박주선·원혜영·이춘석·김동철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6. 14. 황주홍·이찬열·장병완·원유철·이동섭·오영훈·경대수·정동영·박주현·위성곤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7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8. 송석준·김상훈·이만희·최교일·김한표·박덕흠·김재경·정유섭·강석진·김학용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6. 18. 임이자·송희경·문진국·유민봉·윤종필·장석춘·원유철·김규환·김용태·강석호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8. 박덕흠·백승주·서청원·박명재·김승희·윤종필·추경호·홍문표·원유철·경대수·김태흠·김기선·강석진·황영철 의원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6. 18. 안호영·이원욱·임종성·소병훈·김철민·신창현·송갑석·유동수·김영진·기동민·이용득·강훈식·윤후덕·서삼석·박정·최인호·설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9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0. 김기선·조훈현·경대수·박덕흠·김태흠·추경호·김상훈·김도읍·곽대훈·이종배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김학용·임이자·주호영·김무성·신보라·김동철·한정애·성일종·추경호·김성원·이상돈·홍문표·문진국·송희경·전희경·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6. 24. 추경호·김선동·최교일·김광림·김정재·홍철호·박명재·엄용수·윤상직·이채익·정갑윤·이종구·정태욱 의원 발의)

6월 25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염동열·김성원·최교일·정운천·성일종·김정재·김석기·최연혜·여상규·원유철 의원 발의)

6월 27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 임이자·염동열·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학용·정태욱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학용·이명수·정태욱 의원 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 임이자·염동열·정갑윤·김승희·김성원·문진국·장석춘·김학용·김성찬·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9. 7. 2. 한정애·고용진·송영길·신창현·송갑석·박홍근·기동민·정세균·맹성규·조웅천·박경미 의원 발의)

7월 3일 회부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3. 정재호·홍영표·백재현·서영교·전혜숙·권칠승·박홍근·박광운·홍익표·이춘석 의원 발의)

7월 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2019. 3. 21. 천정배·이용호·김광수·전혜숙·장정숙·정동영·유성엽·송영길·조배숙·윤영일 의원 발의)

3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결의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전혜숙·이찬열·장정숙·신용현·윤소하·송옥주·김상희·남인순·신경민·정춘숙 의원 발의)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4. 8. 오영훈 · 이개호 · 이찬열 · 황주홍 ·  
고용진 · 정세균 · 김현권 · 우원식 · 김한정 ·  
송영길 의원 발의)

4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0. 김경협 · 김상희 · 원혜영 · 김정우 ·  
설훈 · 김철민 · 이규희 · 이상현 · 이학영 ·  
신창현 · 이인영 · 윤상현 · 유승희 의원 발의)

4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민홍철 · 김정호 · 정인화 · 주승용 ·  
정성호 · 강훈식 · 이학재 · 기동민 · 전현희 ·  
최도자 · 안규백 · 홍의락 · 함진규 · 서형수 ·  
이동섭 · 윤후덕 · 안호영 · 여영국 · 추미애 의원  
발의)

4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9. 4. 12. 김태년 · 신창현 · 박정 · 신동근 ·  
김해영 · 백혜련 · 김병기 · 최재성 · 임종성 ·  
이상현 · 윤후덕 의원 발의)

4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5. 박성중 · 문진국 · 정태욱 · 정진석 ·  
황영철 · 백승주 · 홍철호 · 박덕흠 · 윤종필 ·  
김석기 · 송언석 · 성일중 · 박명재 · 박순자 의원  
발의)

4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김기선 · 원유철 · 김상훈 · 광대훈 ·  
경대수 · 김도읍 · 추경호 · 박덕흠 · 홍문표 ·  
성일중 의원 발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경대수 · 이종명 · 김종희 · 황주홍 ·  
여상규 · 김현아 · 김성찬 · 박덕흠 · 김태흠 ·  
김기선 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9. 4. 19. 권성동 · 홍철호 · 경대수 · 박덕흠 ·  
김선동 · 장제원 · 황영철 · 이종구 · 박인숙 ·  
이진복 · 정갑윤 · 김기선 · 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9. 4. 22. 도종환 · 박재호 · 최인호 · 김병욱 ·  
조승래 · 정세균 · 송기현 · 이상현 · 안민석 ·  
정인화 · 윤일규 · 이용득 의원 발의)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4. 22. 신용현 · 임재훈 · 채이배 · 김삼화 ·  
김관영 · 김수민 · 황주홍 · 김성수 · 김경진 ·  
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  
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진태 · 민경욱 · 황영철 · 박대출 ·  
지상욱 · 이철규 · 윤상직 · 문진국 · 김선동 ·  
정태욱 의원 발의)

4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5. 7. 이양수 · 이철규 · 황영철 · 김진태 ·  
송기현 · 권성동 · 김기선 · 심기준 · 염동열 ·  
김현아 의원 발의)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조배숙 · 박주현 · 정동영 · 유성엽 ·  
김광수 · 장정숙 · 정인화 · 김종희 · 이용호 ·  
황주홍 의원 발의)

5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9. 5. 22. 백혜련 · 김경협 · 유동수 · 임종성 · 김현권 · 김병기 · 김진표 · 신창현 · 김혜영 · 이규희 의원 발의)

5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윤상현 · 서칭원 · 김순례 · 이은권 · 정유섭 · 김성원 · 성일종 · 이완영 · 원유철 · 박덕흠 의원 발의)

6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고용진 · 기동민 · 유동수 · 변재일 · 추혜선 · 김성수 · 박정 · 이태규 · 박선숙 · 황주홍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9. 6. 17. 김진표 · 정세균 · 김병기 · 김혜영 · 이찬열 · 안규백 · 민홍철 · 윤후덕 · 권칠승 · 백혜련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6. 18. 임이자 · 송희경 · 문진국 · 유민봉 · 윤종필 · 장석춘 · 원유철 · 김규환 · 김용태 · 강석호 의원 발의)

6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조승래 · 이석현 · 이동섭 · 조정식 · 박경미 · 도중환 · 김태년 · 김혜영 · 정세균 · 이후삼 의원 발의)

7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19. 5. 29. 정장선 외 11인으로부터 김진표 · 강훈식 · 김관영 · 김규환 · 김동철 · 김영진 · 박광운 · 백혜련 · 성일종 · 원유철 · 유승민 · 유의동 · 이명수 · 이종배 · 이찬열 · 정종섭 · 최교일 · 황영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련청원 회부**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